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368

제안연월일 : 2026. 10. 1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신안군 행정사무 전반의 예산집행 실태 및 업무추진 과정을 점검하여 행정적 오류와 미진 요소를 바로잡고, 시정·개선 조치를 통해 군정 운영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신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6. 11. 19.(목)~12. 18.(금) **※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 **추진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및 현장

❍ **감사대상:** 군정업무 전반

- **대상기간:** 2025. 11. 1.～2026. 10. 31.(12개월)

※ 신안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사항 포함

- **대상기관:** 1실 3국 2직속기관 9사업소 6출자·출연기관

구분	대상부서
실·국	기획전략실,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북부정원관리사업소,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가거도관리사무소, 동부정원관리사업소,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 수산연구사업소
출자·출연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장학재단, 1004섬요트관광주식회사, 재단법인 예술섬,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신안교통재단

❍ **감사방법:** 상임위원회별 **2개 감사반 구성 및 운영**
- 대상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서류식 감사(필요시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
-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병행 등

□ 세부사항

❍ **감사반별 구성**

구분	소관 위원회	인원	구성
제1반	**행정복지위원회**	4명	반장: 강대성 위원장 반원: 김혁성, 김학기, 문선웅 의원
제2반	**산업건설위원회**	4명	반장: 권오연 위원장 반원: 김용배, 최영진, 최성자 의원

❍ **감사일정(안)**

일차	세부일정	감사장소	참석대상
1일차	• 감사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감사(질의·답변)	각 상임위원회실	부서장 전원참석
2~8일차	• 감사(질의·답변)	각 상임위원회실 및 현장	해당부서
9일차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각 상임위원회실	

□ 행정사항(집행부)

❍ **자료제출 요구사항**
- **제출기한**: 2026. 11. 5.(목)까지(안)
- **제출목록**: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하여 향후 결정
- **제출부수**: 20부
- **주의사항**
  -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 명기하여 제출
  - 현지 감사 시 필요 자료는 피감기관에서 준비

❍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범위**: 부군수, 실·국·과·센터·소장 및 같은 직급 이상
-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364

제출연월일 : 2026. 10. 13.
제 출 자 : 신 안 군 수

1. 제정이유

❍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협의체의 구성 등 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협의체의 운영 및 실무자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신안군 공고 제2026 - 1021호

❍ 예고기간 : 2026. 8. 26.～ 2026. 9. 15.(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자활 업무 담당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수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자 회의)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자활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실시계획 및 수용 가능 인원, 자활근로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자활 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
-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구성,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규정

○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서면 의결, 간사 지정 및 회의록 작성 규정

○ 실무자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자활 업무 관련 공무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로 실무자회의 구성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자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신안군수(2026. 10. 13.)

나. 회부일자 : 2026. 10. 14.

다. 상 정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라. 의 결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실시계획 및 수용 가능 인원, 자활근로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자활 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
-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구성,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규정

❍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서면 의결, 간사 지정 및 회의록 작성 규정

❍ 실무자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자활 업무 관련 공무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의 실무자로 실무자회의 구성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자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생략

5. 축조심사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5

제출연월일 : 2026. 10. 13.
제 출 자 :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군민이 장사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약기관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지원범위 확대(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 신안 1004 추모관 → 협약기관

❍ 신청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신안군 공고 제2026 - 1063호

❍ 예고기간 : 2026. 9. 3.~ 2026. 9. 23.(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신안 1004 추모관(이하 “추모관”이라 한다)”을 “협약기관”으로 한다.

5. “협약기관”이란 제10조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추모관”을 “협약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추모관”을 각각 “협약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중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을 “봉안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업무협약 기관(이하 “목포추모관 휴”라 한다)”을 “협약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추모관 운영을”을 “공영장례 및 봉안비용 지원 업무를”로,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을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추모관”을 “협약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신안 1004 추모관”을 “신안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사망자란의 “안치일”을 “봉안일”로, “봉안증서 번호”를 “봉안장소(봉안증서 번호)”로 하고,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을 “봉안비용”으로 하며,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란의 “신안 1004 추모관”을 “신안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안 1004 추모관”이란 목포시 고하대로 1140-39에 위치한 목포추모관 휴 봉안시설 내에 설치된 신안군 전용 추모관을 말한다.	5. “협약기관”이란 제10조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봉안비용”이란 신안 1004 추모관(이하 “추모관”이라 한다)에 유골 및 분골을 안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 협약기관----------.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① (생 략)	제4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봉안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모관 안치에 따른 봉안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② ---------- 협약기관 ----------

원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내에 소재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추모관에 안치하려는 경우	3. ---------- ------ 협약기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관외 거주 사망자 또는 관외 소재 개장유골 중 그 배우자가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5. ---------- ---------- -- 협약기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④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안비용 지원 업	⑤ ---------- ---------- ------ 봉안비용 ---------- ---------- ----------. --- ----------

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 기관(이하 “목포추모관휴”라 한다)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협약기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추모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약 체결) ---- 공영장례 및 봉안비용 지원 업무를 -------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
제12조(지원금 반환) ① (생 략)	제12조(지원금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유골 반출 등 봉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모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봉안비용 지원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 협약기관----------.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	구 분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화 장 일		년 월 일	
	안 치 일	년 월 일	봉안증서 번 호			
신청금액		금 원정(₩)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 신안 1004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정보에 대하여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신안군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제7조제5항 관련)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	구 분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인 □ 무연고자 □ 외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화 장 일		년 월 일	
	봉 안 일	년 월 일	봉안장소 (종안증서 번호)			
신청금액		금 원정(₩)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신안군민 또는 등록기준지·개장지가 신안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장신고증명서 등) 2.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상자에 한함) 4. 봉안증명서 5. 영수증(또는 사용계약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 신안군 봉안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정보에 대하여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처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군민이 장사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으로 규정된 봉안시설 지원 범위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로 확대하여 장례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장례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약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을 협약기관으로 정의

❍ 공영장례 및 봉안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협약기관으로 확대
- 장례식장 및 봉안시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

❍ 신청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의 봉안비용 지원체계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로 확대하고, 관련 조문과 신청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장사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장례 및 봉안비용 지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신안군수(2026. 10. 13.)
나. 회부일자 : 2026. 10. 14.
다. 상 정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라. 의 결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군민이 장사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으로 규정된 봉안시설 지원 범위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로 확대하여 장례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장례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을 협약기관으로 정의

❍ 공영장례 및 봉안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협약기관으로 확대
- 장례식장 및 봉안시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

❍ 신청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의 봉안비용 지원체계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로 확대하고, 관련 조문과 신청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장사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장례 및 봉안비용 지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생략

5. 축조심사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61

제출연월일 : 2026. 10. 12.
제 출 자 : 신 안 군 수

1. 제안이유

○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신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제7조

3.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나. 필 요 성 :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미술관 관리체계 개선 및 행정비용 절감과 지속적 안정적 운영
다. 내 용 : 저녁노을미술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라. 시설개요 : 부지면적 5,847㎡, 연면적(2층) 1,409㎡

구 분	시설용도	연면적(㎡)	비 고
1	1층 전시실, 수장고	674.41	
2	2층 전시실	637.34	
3	2층 사무실, 북까페	96.77	

※ 위 치 :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350

마.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간 / 수탁기관 : 재단법인 예술섬

바. 소요예산 : 위탁금액 73,854,400원 / 관리운영비 : 82,222,000원
※ 산출근거 붙임 2

마.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세부내용 붙임 3

3.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6. 11월

○ 저녁노을미술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운영 : 2027. 1월 ~

붙임 1. 관련근거 발췌 1부.
2. 소요예산 1부.
3. 적정성 검토 1부. 끝.

붙임 1. 관계근거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기관과 대행 기관(이하"수탁 및 대행 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위탁 및 대행의 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최초 위탁 및 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재위탁(재대행)·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제1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군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제5조(대상사업) 3. 신안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붙임 2. 소요예산

□ 위탁금액 73,854,400원 (인건비 2명)

세부사업	2027년(천원)	산출내역(천원)
총계	73,854	
공공기관 위탁	3,000	국내여비 60,000*2명*25회
	70,854	기본급 85,600원*260일*2명=44,512천원 교통보조비 100,000원*12개월*2명=2,400천원 정액급식비 160,000원*12개월*2명=3,840천원 주유급휴가수당: 85,600원*52주*2명=8,902천원 명절휴가비: 1,300,000원*2회*2명=5,200천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3,000천원*2명=6,000천원

□ 관리운영비 82,222,000원

세부사업	통계목	2027년(천원)	산출내역(천원)
총 계		82,222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	2,341	사무용품 구입비 600 청소용품 구입비 500 정수기 임차료(2대) 67,800원*12월=814 공기청정기 임차료(2대) 35,520원*12월=427
	공공운영비	23,200	공공요금(전기, 통신, 캡스, 상하수도)
미술작품구입 및 관리	사무관리비	5,500	전시물품표구비 3,000 소장품포장박스 제작비 2,500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행사	사무관리비	17,500	문화예술전시행사준비등 - 포스터, 현수막, 도록, 홍보물 제작비 17,500
	행사운영비	11,900	문화예술전시행사준비등 작품 운송, 설치비 11,900
	행사실비지원금	3,500	전시 참여작가 사례비 3,5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4,000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000
	행사실비지원금	5,600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강사비 5,600
미술관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	청소 등 일시사역 3,000
	공공운영비	5,681	소방안전관리 200,000원*12회=2,400 전기안전관리 119,350원*12회=1,433 승강기 유지관리 154,000원*12회=1,848

붙임 3. 적정성 검토서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26년예산 : 73,854,000천원
▶위탁기관 : 재단법인 예술섬
▶사업내용 : 저녁노을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적정성 사전 검토 : 적정 (공공기관 위탁 대상사무)

검토항목	사전검토 결과	비고
다른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공익성에 기반한 단체 중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위탁운영 방식 적정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재단법인 예술섬은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방배정법」제17조제2항 및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경제적 효율성	·재단법인 예술섬은 해당 사무에 관한 전담 추진이 가능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의 연계협력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 가능	
수탁 · 대행 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문화예술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경험과 네트워크 및 운영능력 보유 등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협약 및 사업계획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성과 측정이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처리·정산 및 사업수행 감독이 용이하며,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투명한 업무수행 가능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군 출연기관으로서 대외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행정이 보장됨.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신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제7조

3. 주요내용

❍ 위 탁 명 :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 위탁사무
- 미술관 운영 및 시설 관리
-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운영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장품 관리 및 수장고 운영
- 기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시설현황
- 위 치 :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350

- 부지면적 : 5,847㎡
- 연 면 적 : 1,409㎡(지상 2층)

❍ 수탁기관 : 재단법인 예술섬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소요예산

- 위탁금 : 73,854천원
- 관리운영비 : 82,222천원
- 총사업비 : 156,076천원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신안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예술섬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수탁 예정기관인 재단법인 예술섬은 신안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주요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미술관 운영 사무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저녁노을미술관은 문화예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관리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위탁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신안군수(2026. 10. 12.)

나. 회부일자 : 2026. 10. 14.

다. 상 정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라. 의 결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신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탁 명 :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 위탁사무

- 미술관 운영 및 시설 관리
-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운영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장품 관리 및 수장고 운영
- 기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시설현황
- 위 치 :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350
- 부지면적 : 5,847㎡
- 연 면 적 : 1,409㎡(지상 2층)

❍ 수탁기관 : 재단법인 예술섬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소요예산
- 위탁금 : 73,854천원
- 관리운영비 : 82,222천원
- 총사업비 : 156,076천원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신안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예술섬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수탁 예정기관인 재단법인 예술섬은 신안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미술관 운영 사무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저녁노을미술관은 문화예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관리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위탁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생략

5. 축조심사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의안 번호	2367

제안연월일 : 2026. 10. 1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집행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우수 사례 및 시정·개선사항 발굴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내실있는 사업장 운영 실현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6. 10. 19.(월)~10. 30.(금) ※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 **확인대상:** 14개 읍.면 주요 사업장 및 민원 발생 현장 등

- **대상기간:** 2025. 8. 1.～2026. 7. 31.(12개월)
- **대상범위:**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국·특별시비 보조, 민간자본 보조, 읍·면 재배정 포함한 군 자체)
  -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발주)중에 있는 사업장
  -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민원발생 사업
  - 계속사업 추진·미추진 중인 사업
  - 계획 또는 추진예정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

❍ **확인사항**

- 설계에 의한 성실 시공 여부
- 견실시공 여부 및 하자관리 실태
- 민원 발생 사업 관계법 적용 여부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피해 실태
- 기타 주민 의견 수렴 및 읍·면 건의 사항 청취 등

❍ **확인방법:** 상임위원회별 2개 확인반 구성 및 운영

□ 세부사항

❍ 확인반별 구성

구분	소관 위원회	인원	구성	현장지원
제1반	**행정복지위원회**	4명	반장: 강대성 위원장 반원: 김혁성, 김학기, 문선웅 의원	의회사무과 2명 등
제2반	**산업건설위원회**	4명	반장: 권오연 위원장 반원: 김용배, 최영진, 최성자 의원	의회사무과 2명 등

❍ 확인반별 소관 부서

구분	소관 위원회	부서현황	대상부서
제1반	**행정복지위원회**	16과 2사업소	**기획전략실**(5과), **문화예술관광국**(9과), **보건소**(2과),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가거도관리사무소**
제2반	**산업건설위원회**	15과 7사업소	**섬안전개발국**(7과), **신재생에너지국**(4과), **농업기술센터**(4과), **상하수도사업소, 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정원관리사업소, 수산연구사업소**

□ 행정사항

❍ 의회사무과

-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부 통보
- 확인반별 현장 자료 취합 및 일정 조정(소관 전문위원)
- 현지확인 결과 작성 및 집행부 통보, 집행부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관리

❍ 사업소관 부서

- 현장별 관계 부서장 및 팀장급 이상 공무원 참석(필요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사업장 설명 자료 준비(사업 개요, 추진상황, 예산집행, 민원 및 하자관리 등)
- 자적사항 및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시행

❍ 읍·면사무소

- 당면 현안 사항 보고
- 현장 안내 및 현지 교통수단 협조
- 민원 발생 또는 우려 사항 사전 파악 및 자료 제공

제339회 임시회
10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신 안 군 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Ⅰ 현지 확인 개요

1. 점 검 반

위원회	대상읍면	확인 의원	수행공무원
행정복지 위 원 회	10개 읍·면	강대성 의원, 김학기 의원 김혁성 의원, 문선웅 의원	의사과장 김홍일 입법지원팀장 조재만

2. 기 간: 2026. 10. 20.(화) ~ 10. 26.(월) / 5일간(토,일 제외)

3. 현지확인 대상 목록 : 별첨

4. 중점확인사항
- ○ 설계도면에 의한 성실시공 여부, 견실시공 여부 및 하자관리 실태
- ○ 민원발생사업 관계법 적용여부
- ○ 주민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Ⅱ 현지 확인 결과

1 총 평

○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과 기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 등 21개소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202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현지 확인한 결과,

○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며, 완공 후 수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목적에 맞는 접근성 검토가 필요하고 활용 가치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장별 장·단기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효성이 있는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한 곳에는 조속한 보완시공 등을 조치하였으며, 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확고한 책임 의식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향후대책

□ 문제점

○ 방문한 사업장별로 일부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및 김환기미술관, 플로팅미술관 등 신규 개관을 앞둔 시설들에 난간 설치 등 안전 문제 점검이 필요해 보였으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book-아일랜드 팔금커뮤니티 조성 사업, 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 등 사업 대상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일부 지적됨.

○ 또한, 신안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본격적인 운영 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

□ 향후 대책

○ 사업장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보완·시정 조치

○ 해당 지역구 의원이 요구한 시정 사항에 대하여 완결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군정 질의, 의원 자료요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3 현장 확인 사업장 대상 및 결과

【총 괄】

사 업 장		지 적(당 부)사 항	관 련 부 서
압해읍	1)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점검	① 입소 인원 확충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고용 방안 검토(수당제도 현실화 등) ② 당직근무 조 운영 시, 야간에도 수월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자 성비 고려 편성	노인 건강과
	2) 천사대교 관광안내시설 점검	① 관광안내소 안전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주변 CCTV 설치 검토. ② 천사대교 진입로에 식재된 동백나무 가로수의 관리 철저(압해읍)	문화 관광과
	3) 신안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 건립	① 예정일에 맞춰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 철저 ②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건립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뮤지엄 조성과
지도읍	1) 신안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① 인력 채용 이외에도, 실제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직 구성 등 운영 여건 마련 필요 ② 수영장, 헬스장 등 적절한 시설 사용요금 책정 검토	건강 증진과
	2)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1,2차)	① 기 완료된 탐방로와 기존도로 간, 미연결 구간에 대한 추가 조성 사업 추진 검토	세계 유산과
하의면	1) 문화관광시설 점검 (후광1924)	① 운영대표자(청소년지도사) 선임 어려움 등으로 휴장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시설 관리 및 유지 철저 ②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의 조속한 추진	문화 관광과
	2) 문화관광시설 점검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① 개관 17년차로 시설물 및 전시자료 낙후에 따른 자료 현행화, 테마 변경 등 운영 대응 방안 검토	문화 관광과

사 업 장		지 적(당 부)사 항	관 련 부 서
신의면	1) 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 건립	① 야외 난간 등 안전 사항에 점검 철저 ② 진입도로 정비 및 조경 작업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섬발전진흥과, 정원산림총괄과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공적 개관 추진	뮤지엄 조성과
	2) 동아시아 인권평화 문화 창작촌 조성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류 중인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조속한 수립 및 확정 필요	뮤지엄 조성과
자은면	1) 자은 도서해양자생식물 테마공원 조성 건축공사	① 예정일에 맞춰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 철저	뮤지엄 정원과
	2) 1004섬길역(자은 땅콩랜드) 신축공사(건축)(총괄)	① 사업명대로 땅콩과 관련한 일관된 컨셉을 유지하며,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문화 관광과
	3) 1004섬길역(자은 땅콩랜드) 야외무대 제작설치 토목공사	①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② 토목공사 준공 이후, 야외무대 제작 설치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	문화 관광과
안좌면	1) 김환기미술관 건립	① 진입 불가한 곳이나, 추락 위험 장소에 난간 설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	뮤지엄 조성과
	2) 김환기미술관(플로팅뮤지엄) 건립	① 물에 떠 있는 전시시설인 만큼 저수지 물의 충분한 여유가 필요, 신촌저수지를 대체할 농업용수 저수지 확보 검토 ② 개관전까지 설치된 전시물품 관리 철저 및 통행로 난간 등 안전사항 점검	뮤지엄 조성과
팔금면	1)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① 노후된 건물인 만큼, 철저한 건축물 보강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추진 ② 공사 중단 상황임에도 기존 잔여 작업 추진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인구 정책과
	2) Book-아일랜드 팔금커뮤니티 조성사업	① 건물 노후 및 부식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사전 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 철저	인구 정책과

사 업 장		지 적(당 부)사 항	관 련 부 서
암태면	1) 암태면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① 본격적인 운영 전, 건물 주변 풀베기 작업을 통한 경관 정비 검토 ② 내부 공사 작업으로 발생된 수영장 내부 얼룩 등 제거 필요	건강증진과
비금면	1) 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민자보)	① 해당 사업으로 건축물 일부 부분 구조보강을 하였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안전진단 등 관리 철저	보건행정과
	2) 섬 취약지 간호보건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① 기숙사 이용 인력들의 안전과 이용 편리를 고려하여, 건물 및 주차장 위치 검토 ② 당초 사업비 대비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및 예산 편성 추진	보건행정과
	3) 바다의 문화시설 조성사업	① 신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관리 감독 철저 ② 작품 조망을 위하여, 전망대 및 진입로 등 향후 공사시공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	뮤지엄조성과
도초면	1)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① 천장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 지붕 설치 검토 ② 건물 내부 2층에 천장 누수가 진행되는 상태로, 원인 규명 및 보완 대책 마련 시급 ③ 해당 사업 관련, 천장 누수 문제가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보건행정과

4 사업장별 세부 점검결과

【압해읍】 ⇒ 10월 20일 (화)

1)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점검

사 업 개 요

○ 시설위치: 압해읍 구항길 92-62
○ 시설유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 운영목적: 입소 어르신의 생활지원 및 요양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운영방식: 민간위탁(수탁기관: 신안군복지재단)
- 입소정원: 75명 / 현원: 54명
- 종사자 수: 45명(일반종사자 18, 요양보호사 27)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입소 인원 확충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고용 방안 검토(수당제도 현실화 등)

○ **당부사항**
- 당직근무 조 운영 시, 야간에도 수월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자 성비 고려 편성

현 장 사 진





2) 천사대교 관광안내시설 점검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441-8
○ 사업기간: 2019. 01. ~ 04.
○ 사업내용: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수요 대비
  - 관광 안내 및 관광객 쉼터
○ 사 업 비: 48.5백만원(군비)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관광안내소 안전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주변 CCTV 설치 검토
○ **당부사항**
  - 천사대교 진입로에 식재된 동백나무 가로수의 관리 철저(압해읍)

현 장 사 진




3) 신안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 건립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37-1 일원
○ 사업기간: 2021. 12. 03. ~ 2027. 02. 21.
○ 사업내용
 - 시설규모: 부지면적 21,413㎡, 건축연면적 7,278.06㎡, 건물1동(지상3층)
 - 시설내용: 공연장, 사무실, 다목적실 등
○ 사 업 비: 25,065백만원 (문예회관 23,665, 문화원 1,4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예정일에 맞춰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 철저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건립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적절한 시설 관리 주체 선정
  •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유치 및 활성화 방안 수립

현 장 사 진





【지도읍】 ⇒ 10월 21일 (수)

1) 신안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05-27
○ 사업기간: 2020. 01. ~ 2025. 11.
○ 사업내용
- 시설규모: 지상2층, 연면적 2,118㎡, 건축면적 1,497㎡
- 시설내용: 수영장, 헬스장, 청소년 상담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 사업비: 16,200백만원 (기금6,100, 균특112, 국비50, 군비 9,938)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인력 채용 이외에도, 실제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직 구성 등 운영 여건 마련 필요
- 수영장, 헬스장 등 적절한 시설 사용요금 책정 검토

현 장 사 진




2)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1,2차)

사 업 개 요

(1차)
○ 사업위치: 지도읍 내양리 산109-9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4. 09. 02. ~ 2026. 05. 15.
○ 사업내용: 탐방로 정비 L=630m
○ 사 업 비: 530백만원 (도비 291, 군비 239)
(2차)
○ 사업위치: 지도읍 내양리 산23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5. 12. 29. ~ 2026. 06. 26.
○ 사업내용: 탐방로 정비 L=2,221m(2차)
○ 사 업 비: 286백만원 (도비 157, 군비 129)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기 완료된 탐방로와 기존도로 간 미연결 구간에 대한 추가 조성 사업 추진 검토

현 장 사 진





【하의면, 신의면】 ⇒ 10월 22일 (목)

1) 문화관광시설 점검(후광1924)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하의면 후광리 122-1번지 일원(후광길 239-16)
○ 사업기간: 2010. ~ 2015.
○ 사업내용
- 부 지: 숙박시설 1,682㎡(510py), 관리동 132㎡(40py)
- 시설물: 유스호스텔(객실 12실, 세미나실), 관리동, 전시관, 노벨미로공원, 김대중 前대통령 어록길 등

○ 사 업 비: 8,580백만원 (균특 5,142, 군비 3,438)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운영대표자(청소년지도사) 선임 어려움 등으로 휴장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시설 관리 및 유지 철저
-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의 조속한 추진

현 장 사 진




2) 문화관광시설 점검(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하의면 대리 35-9 (하의로 115)
○ 개관일자: 2009. 04. 24.
○ 사업내용
 - 부 지 : 17,699㎡, 건물 612㎡
 - 시설물 : 조형물 1식, 하의소작쟁의기념비 5기, 기념탑 1기
○ 사 업 비: 2,935백만원 (국비 700, 군비 735, 교부세 1,5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개관 17년차로 시설물 및 전시자료 낙후에 따른 자료 현행화, 테마 변경 등 운영 대응 방안 검토

현 장 사 진



3)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건립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하태동리 44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 2026.
○ 사업내용: 부지면적 9,483,㎡, 건축면적 1,599.49㎡, 연면적 2,773㎡
- 건물2동(지하1 608㎡, 1층 1,235㎡, 2층 814㎡, 작가작업실 132㎡)
○ 사 업 비: 195백만원 (균특 56, 군비 139)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야외 난간 등 안전 사항에 점검 철저
- 진입도로 정비 및 조경 작업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섬발전진흥과, 정원산림총괄과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공적 개관 추진

현 장 사 진




4) 동아시아 인권평화 문화 창작촌 조성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의면 신의로 203-49
○ 사업기간: 2025. ~ 2026.
○ 사업내용: 대지면적 9,980㎡ 건축연면적 963.63㎡ 지상 1층
  - 숙소(1~2인) 6실/ 사택 2개동/ 세탁실/ 공용주방/ 창고형 전시장
○ 사 업 비: 5,000백만원 (균특 2,500, 군비 2,5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류 중인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조속한 수립 및 확정 필요

현 장 사 진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 10월 23일 (금)

1) 자은 도서해양자생식물 테마공원 조성 건축공사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1934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2019. 1. ~ 2027. 3.
○ 사업내용: 자은 도서해양자생식물 테마공원 조성 건축공사
- 휴양관 1동, 수변데크 조성, 파고라 쉼터 등
○ 사 업 비: 3,800백만원 (국비1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예정일에 맞춰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 철저

현 장 사 진





2) 1004섬길역(자은 땅콩랜드) 신축공사(건축)(총괄)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자은면 백산리 633-7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4. 12. ~ 2026. 10.

○ 사업내용: 카페, 특산물 판매, 전시연출, 공연장, 숙소 등

- 부지면적 1,735㎡, 지상 2층, 연면적 997.5㎡

○ 사 업 비: 4,736백만원 (도급 4,013, 관급 723)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사업명대로 땅콩과 관련한 일관된 컨셉을 유지하며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현 장 사 진





3) 1004섬길역(자은 땅콩랜드) 야외무대 제작설치 토목공사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자은면 백산리 633-5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6. 01. ~ 2026. 12.

○ 사업내용

- 야외무대 설치 1개소(L 45m×B 30m×H 17m), 이동식 화장실
- 도막포장 1,900㎡, L형측구 115m, 옹벽블럭 97m 등

○ 사 업 비: 1,740백만원 (도급 450, 관급 1,29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 토목공사 준공 이후, 야외무대 제작 설치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

현 장 사 진



4) 김환기미술관 건립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714번지 외 9필지 일원
○ 사업기간: 2014. ~ 2027.
○ 사업내용
- 사 업 량: 건축연면적 1,732.17㎡(건축면적 2,023.06㎡)
- 시설내용: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휴게실 등
○ 사업비: 10,750백만원 (국비 2,200/ 특별시비 500/ 군비 9,05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진입 불가한 곳이나, 추락 위험 장소에 난간 설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

현 장 사 진





5) 김환기미술관(플로팅뮤지엄) 건립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안좌면 읍동리 1500번지 신촌저수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6.
○ 사업내용
- 사 업 량: 건축연면적 1,732.17㎡ (건축면적 2,023.06㎡)
- 시설내용: 전시실, 휴게실 등
○ 사업비: 9,406백만원
- 건축 6,447, 전기 574, 통신167, 소방330, 작품 1,200, 감리 77, 용역 611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물에 떠 있는 전시시설인 만큼 설치 장소인 신촌저수지 물의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므로, 신촌저수지를 대체할 농업용수 저수지 확보 검토

○ **당부사항**
- 개관전까지 설치된 전시물품 관리 철저 및 통행로 난간 등 안전사항 점검

현 장 사 진




6)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팔금면 탑목개길 124(안좌중학교 팔금분교)
○ 사업기간: 2022. ~ 2026.
○ 사업내용
- 폐교 리모델링 1식(책을 이용한 서점 카페 공간 및 관광객을 위한 숙소 등)
- 다목적홀 신축 1식
○ 사 업 비: 7,050백만원 (광역기금 4,230, 군비 2,82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노후된 건물인 만큼, 철저한 건축물 보강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추진
- 공사 중단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중 잔여 작업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현 장 사 진




기 Book-아일랜드 팔금커뮤니티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팔금면 읍리 121-1번지 일원(신안농협 팔금지점)
○ 사업기간: 2025. ~ 2026.
○ 사업내용
- Book-아일랜드 거점 커뮤니티센터(거점센터, 작가의 집, Cook・Flower&Book, Music・Bed&Book 등) 건립 1식
- 열린 서재 1식: 작가들의 소통공간, 주민 대상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
- 테마길 조성 1식: 문학의 길, 지혜의 길, 사색의 길 조성

○ 사 업 비: 8,600백만원 (기초기금 8,6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사업 대상 건물의 연식에 따라, 건물 노후 및 부식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사전 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 철저

현 장 사 진





8) 암태면 복합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70-1, 970-2

○ 사업기간: 2019. 7. ~ 2025. 11.

○ 사업내용

- 시설규모: 지하1~지상3층, 연면적 4,482.15㎡, 건축면적 1,998.45㎡
- 시설내용: 수영장, 청소년 문화의집,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 사업비: 27,700백만원

- 기금 3,000, 균특 2,998, 특교 500, 특별시비 150, 군비 21,052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본격적인 운영 전, 건물 주변 풀베기 작업을 통한 경관 정비 검토
- 내부 공사 작업으로 발생된 수영장 내부 얼룩 등 제거 필요

현 장 사 진





【비금면, 도초면】 ⇒ 10월 26일 (월)

1) 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민자보)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비금면 송치길 155-11(비금 대우병원)
○ 사업기간: 2025. 01. ~ 2026. 12.
○ 사업내용: 건축물 리모델링
 - 진입로 확포장, 건축물 구조보강 및 내외부 리모델링
○ 사 업 비: 2,700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7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해당 사업으로 건축물 일부 부분 구조보강을 하였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안전진단 등 관리 철저

현 장 사 진




2) 섬 취약지 간호보건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비금면 수대리 57-1

○ 사업기간: 2024. 04. ~ 2027. 06.

○ 사업내용: 간호보건인력 기숙사 건립

- 20실, 지상 4층, 연면적 970㎡

○ 사 업 비: 5,355백만원 (도 1,800, 군비 1,200 / 추가군비 2,354)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기숙사 이용 인력들의 안전과 이용 편리를 고려하여 건물 및 주차장 위치 검토
- 당초 사업비 대비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및 예산 편성 추진

현 장 사 진



3) 바다의 문화시설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비금면 구림리 원평해변 일원
○ 사업기간: 2021. ~ 2026.
○ 사업내용: 조형물 1,800㎡, 산책로 및 주차장 1식
○ 사 업 비: 24,000백만원 (소멸대응기금 8,720, 군15,28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당부사항**
- 신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관리 감독 철저
- 작품 조망을 위하여, 전망대 및 진입로 등 향후 공사시공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

현 장 사 진




4)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도초면 수항리 1396-1(도초면 보건지소)
○ 사업기간: 2024. ~ 2025. 09.
○ 사업내용: 건축물 리모델링(에너지효율)
- 건물 내외부 단열 마감재 교체, 태양광설비 등 설치
○ 사 업 비: 500백만원 (균특 150, 군비 35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천장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 지붕 설치 검토

○ **당부사항**
- 건물 내부 2층에 천장 누수가 진행되는 상태로, 원인 규명 및 보완 대책 마련 시급
- 해당 사업 관련, 천장 누수가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현 장 사 진




제339회 임시회
13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신 안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Ⅰ 현지 확인 개요

1. 점 검 반

위원회	대상읍면	확인 의원	수행공무원
산업건설 위 원 회	13개 읍·면	권오연 의원, 최성자 의원 김용배 의원, 최영진 의원	전문위원 박일영 입법지원팀 김선중

2. 기 간: 2026. 10. 20.(화) ~ 10. 26.(월) / 7일간

3. 현지확인 대상 목록 : 별첨

4. 중점확인사항

○ 설계도면에 의한 성실시공 여부, 견실시공 여부 및 하자관리 실태
○ 민원발생사업 관계법 적용여부
○ 주민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Ⅱ 현지 확인 결과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상하수도 및 배수시설, 관광·정원시설 등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주민 편익 증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음.

○ 현지 확인 결과, 일부 사업장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준공 이후 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수산물 유통센터 단지조성사업은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입지 여건과 기업 입주 수요,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음.

○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위탁운영 및 예산 집행 관리,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도로 복구와 주민 통행 안전, 염전근로자 안심숙소의 입주 지연, 정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업별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사업 완료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성과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향후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시공·운영·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문제점 및 향후대책

□ 문제점

○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 운용의 적정성 검토 미흡**

-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실제 이용 수요,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특히 농수산물 유통센터 단지조성사업은 전액 군비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업 입주 수요,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공공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체계 미흡**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위탁운영비 집행 및 정산 관리, 염전근로자 안심숙소의 입주 지연, 하의 인동귤 묘목의 이식 필요성 등 일부 시설에서 준공 이후 운영 정상화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 생활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공사구간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비금 한산 지방상수도 정수장 관련 노후 상수관망의 높은 누수율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하수관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서는 도로 임시포장 불량, 공사구간 통행 불편, 추락사고 위험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업 완료 이후 실질적인 활용성과 경제적 효과 검증 필요

- 야간경관 조명과 어항시설 등 일부 사업은 실제 관광객 및 시설 이용 수요를 고려한 투자 효과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개체굴 양식산업과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조성사업 등은 생산·판매 실적뿐 아니라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 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향후 대책

○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재정관리 강화

-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과 이용 수요, 경제성 및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증액 및 추가 소요예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농수산물 유통센터 단지조성사업은 입주기업의 실제 투자 및 입주 의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존 유사 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비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공시설 운영 정상화 및 유지관리 대책 마련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위탁운영비 집행과 판매 수익 정산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수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염전근로자 안심숙소는 입주자 모집 및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설의 장기 유휴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와 함께 자체 재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누수 취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하수관로·소하천 및 어항시설 정비사업은 도로 복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구간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 통행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사업성과 중심의 관리·감독 및 사후점검 강화

- 관광·농수산업 관련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예산 집행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 운영 성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특히 개체굴 양식산업은 연도별 투자액 대비 참여 어가의 생산·판매실적과 실제 소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은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와 관내 양식어가 대상 할인판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현장 확인 사업장 대상 및 결과

【총 괄】

사 업 장		지 적(당 부)사 항	관 련 부 서
비금면	① 수치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적사항**: 물양장 정비 후 어구·어망 등이 무질서하게 적치되어 항만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 필요. **당부사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구 적치 공간 확보와 항만 환경정비 및 시공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섬발전 진흥과
	② 비금 수치마을 색채사업	**지적사항**: 도색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탈색과 도막 박리가 발생하여 마을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원인 규명 및 보수대책 마련 필요. **당부사항**: 시공 공정과 사용 도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도색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섬발전 진흥과
	③ 비금 한산 지방상수도 정수장	**지적사항**: 노후 상수관망으로 누수율이 높아 주민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정비와 자체 재원 확보 방안 검토 필요. **당부사항**: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군비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누수 취약지역부터 우선 정비하기 바람.	상하수도 사업소
	④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지적사항**: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영농 여건 검토의 적정성 확인 필요. **당부사항**: 시설의 실제 영농·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업용수 확보와 지속적인 시설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친환경 농업과
	⑤ 신안 비금태양광 발전사업	**지적사항**: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변에 노출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차폐식재와 경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당부사항**: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폐식재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행 및 주민 이익공유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태양광과, 정원산림 총괄과

사 업 장		지 적(당 부)사 항	관 련 부 서
도초면	⑥ 죽도항 소규모 어항 시설 확충	**지적사항**: 물양장 확장 및 진입로 숭상공사와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당부사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섬발전 진흥과
	⑦ 도초 지남소하천 정비사업	**지적사항**: 하천 횡단 교량의 코너부가 협소할 경우 차량 회전에 불편이 발생하고, 공사구간의 추락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대책 마련 필요. **당부사항**: 교량 코너부 가각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주·야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추락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안전 총괄과
	⑧ 지역특화 스파트팜 조성사업	**지적사항**: 수탁기관의 운영인력 공백과 위탁운영비 집행 및 판매수익 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 **당부사항**: 민간위탁금 집행과 판매수익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수 관리인력 충원 등 운영 정상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친환경 농업과
	⑨ 안심숙소 지원사업 (천일염)	**지적사항**: 숙소 준공 이후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주 지연 원인 분석 및 운영 대책 마련 필요. **당부사항**: 염전근로자 입주 수요를 파악하여 입주자 모집과 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천일염 지원과
지도읍	⑩ 광정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적사항**: 하수관로 공사구간의 임시포장 불량과 도로 단차로 주민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신속한 보수 필요. **당부사항**: 공사구간의 임시포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보수하고, 고령자 등 주민 통행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상하수도 사업소
	⑪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공사	**지적사항**: 별도 지적사항 없음. **당부사항**: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된 기간 내 준공 및 시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수산연구 사업소
	⑫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지적사항**: 일부 수목이 과밀하게 식재되어 향후 생육 경쟁과 고사 등이 우려되므로 식재 간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필요. **당부사항**: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경관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정원산림 총괄과

사 업 장		지 적(당 부)사 항	관 련 부 서
증도면	⑬ 증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적사항**: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기능 개선을 위해 수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암거 등 활용 가능한 시설의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 **당부사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안전 총괄과
임자면	⑭ 부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적사항**: 하수관로 매설 후 도로포장 복구 시 단차와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도로와의 연결 상태 및 시공 품질 확보 필요. **당부사항**: 마을안길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의 도로 복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상하수도 사업소
장산면	⑮ 장산 앤두.막금항 신활력증진사업	**지적사항**: 막금항 연약지반 구간의 지반침하 및 구조물 변형을 예방하고, 선착장과 물양장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적정성 점검 필요. **당부사항**: 연약지반 보강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어업인의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섬발전 진흥과
하의면	⑯ 하의 인동귤 정원	**지적사항**: 시설하우스 내 인동귤 묘목 6,000주의 생육공간이 부족하여 성장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이식 부지 확보 필요. **당부사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묘목 이식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남부정원 관리사업소
신의면	⑰ 상동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지적사항**: 별도 지적사항 없음. **당부사항**: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배수시설의 시공 품질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안전 총괄과
자은면	⑱ 대율지구 사방댐 설치사업	**지적사항**: 별도 지적사항 없음. **당부사항**: 준공된 사방댐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사태 및 토사유출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사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바람.	정원산림 총괄과
	⑲ 송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지적사항**: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관리와 살수차 운영에 따른 도로·차량 오염 방지 등 주민 불편 해소대책 마련 필요. **당부사항**: 신호수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살수차 운영방법 개선과 도로 청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상하수도 사업소

사 업 장		지 적(당 부)사 항	관 련 부 서
암태면	⑳ 중부권역 야간관광 개선사업(은암대교)	**지적사항**: 은암대교 경관조명 설치 시 관광객의 조망 장소가 제한되어 사업비 대비 관광 효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당부사항**: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섬발전 진흥과
팔금면	㉑ 팔금 엘로우킹 정원	**지적사항**: 정원 내 무인카페와 잔디광장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가능성 검토 필요. **당부사항**: 기존 시설을 활용한 캠핑장·글램핑장 등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	중부정원 관리사업소
안좌면	㉒ 우목항 뉴딜300사업 (선착장조성)	**지적사항**: 선착장과 연계 교량 및 진입시설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연계계획 검토 필요. **당부사항**: 선착장의 실제 이용 수요와 연계 교량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이용 편의성과 해양환경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섬발전 진흥과
압해읍	㉓ 농수산물 유통센터 단지조성사업	**지적사항**: 약 130억 원 전액을 군비로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산지 절취를 통한 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입지 적정성, 입주기업 확보 및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당부사항**: 사업비 집행과 증액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와 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예산 낭비 및 시설 유휴화를 방지하기 바람.	천일염 지원과
	㉔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조성사업	**지적사항**: 국비와 군비 등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관내 양식어가의 실질적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료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당부사항**: 관내 양식어가 대상 15% 할인판매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료를 생산하여 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바람.	해양 자원과
	㉕ 개체굴 양식·출하 및 보관시설	**지적사항**: 개체굴 양식산업의 연도별 투자액과 참여 어가별 생산·판매실적 및 실제 순소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자 유상 공급에 따른 어업인 부담 검토 필요. **당부사항**: 양식어가의 실제 소득 증대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종자 공급체계와 안정적인 국내외 판로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수산연구 사업소
	㉖ 수산물 중형저온저장 시설사업(건축)	**지적사항**: 별도 지적사항 없음. **당부사항**: 냉동설비의 내구성과 예비장치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새우 양식어가의 출하 시기 조절과 수급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바람.	해양 수산과

4 사업장별 세부 점검결과

【비금면, 도초면】 ⇒ 10월 20일 (화)

1) 비금 수치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기항지개선)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비금 수치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기항지개선사업)
○ 사업위치 : 비금면 수치리 841-2번지 일원(수치항)
○ 사업기간 : 2026. 05. 06. ~ 2027. 04. 30.
○ 사 업 량 : 물양장 보강 및 포장 L=173m, B=14m
○ 총사업비 : 738,367천원(도급 600,307 관급 138,060)

점 검 결 과

○ 개선(지적)사항
- 물양장 정비사업 완료 후 어구·어망 등이 무질서하게 적치될 경우 항만 경관을 저해하고 사업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구 적치 공간의 적정성과 항만 주변 환경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준공 이후 어선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2) 비금 수치마을 색체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비금면 수치도 일원
○ 사업기간: 2022. 04. 13. ~ 2022. 11. 07.
○ 사업내용: 건축물 지붕 및 벽체 도색 271개소
○ 사 업 비: 244백만원 (국비 171, 도비 22 군비 51)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마을 건축물에 시행한 색채사업의 도색 부분에서 탈색과 도막 박리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마을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색채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향후 색상 선정 시 내구성과 내후성이 우수한 색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부서에서는 탈색 및 도막 박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도색 등 실효성 있는 보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3) 비금 한산 지방상수도 정수장[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신안군 비금 한산중블록 등 6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 사업위치: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일원
○ 사 업 량: 노후관로정비 23,641m(배수관 19,519m 급수관 4,122m)
○ 사업기간: 2027. 01. ~ 2031. 12.(5년)
○ 사 업 비: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국비 확보 일정에 따라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군비 및 지방채 등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관계 부서에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군비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조기 정비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사업위치 :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산10-1(노대도)
○ 사 업 량 : 100평 *평당 82,500원/㎡당 25천원
○ 사 업 비 : 8,250천원(도비 1,237.5[15%], 군비 2,887.5[35%], 자담 4,125[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지원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시설하우스 설치 이후 작물 재배 및 시설 활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향후 농업시설 보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의 영농계획뿐 아니라 농업용수·전력 공급 여건과 지속적인 시설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5) 도초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사업(죽도항)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도초면 지남리 산126번지 전면해상
○ 사 업 량 ┌ 물양장 정비 L=24m, B=5➠8m, 진입로 숭상 L=43m
　　└ 진입로 숭상 L=67m, B=4m
○ 총사업비: 352백만원(도급 287 관급 65)
○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 예산과목: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보조) / 시설비
○ 공 정 률: 3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물양장 확장 및 진입로 숭상공사 시 어선 접안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구조와 이용 편의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물양장과 진입로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된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과 어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6) 도초 지남소하천 정비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도초면 지남리 181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2. 07. 05. ~ 2026. 12. 31

○ 사업내용: 소하천 정비 L=2.39km

- 축제공 : 흙쌓기 11,987㎥, 흙깍기 6,149㎥, 순성토 8,156㎥, 사토 7,508㎥
- 호안공 : 식생옹벽블럭 7,625㎡, 식생매트 1,606㎡,
-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L=1.66km , 아스팔트 포장 L=1.94km

○ 사업비: 4,870백만원 (전환사업)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공사구간이 주민 통행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하천 추락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 중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하천 횡단 교량 설치 시 코너부 가각 처리하여 차량 회전 공간 확보
- 공사 기간 중 주·야간 통행 차량 및 보행자 하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드럼통, 아바콘, 경광등 등) 적정하게 설치

현 장 사 진



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 위　　치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91-1외 17필지
- ❍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일괄수탁)
- ❍ 온실규모 : 40,153.2㎡ = A동(24,143.2㎡) + B동(16,010㎡)
- ❍ 사업기간 : 2022. 01. ~ 2025. 05.
- ❍ 총사업비 : 264억원 (위수탁비 224, 군자체사업비 40)
  - 위・수탁비 : 224억원 (국비 140, 도비 12, 군비 48) + 군비 24
  - 군자체사업비: 40억원
- ❍ 사업내용 : 스마트온실, 환경제어기, 공기열난방, 스마트센터, 지원센터 및 시설 등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연간 4억 5천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예산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바나나 생산・판매 실적과 시설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규모 재정투자에 상응하는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8)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지원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도초면 오류리 989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사업내용: 건물 신축 1식

- 1권역: 1개동, 지상2층, 철콘구조, 연면적(647.73㎡), 대지면적(4,748㎡)

○ 사업비: 3,000백만원 (통합시비 1,800, 군비 1,2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염전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숙소를 건립하였으나, 준공 이후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조속한 운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2027년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염전근로자 입주자 모집· 운영 관리 철저
- 염전근로자 입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준공된 시설이 장기간 유휴시설로 남지 않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9) 신안 비금태양광 발전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비금면 일원

○ 사업기간: 2025. 03. ~ 2027. 08.

○ 사업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130.9MW

- 육상 105.9MW / 수상 25MW

○ 사업비: 2,000억원 (민간투자)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태양광발전소 차폐식재와 관련하여, 염전 등 수목 생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발전사업자가 군에 차폐식재 공사비를 납부하고,
- 군에서 국도변과 태양광발전소 사이의 도로 접도구역 및 유휴부지에 성토 후 수목 식재하여 비금면 주요 관문 도로변 경관 개선 필요

⇒ (부서의견) 국도 관리 부서와 식재 행위 가능 유무 협의 후 진행

○ 당부사항

- 개발행위 준공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이익공유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차폐식재 사안을 조속히 이행

현 장 사 진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 10월 21일 (수)

10) 지도 광정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3,4,5 및 감정1,5 일원
○ 공사기간 : 2026년 6월 24일 - 2027년 6월 23일(24개월)
○ 사업내용: 관로 L=10.970km, 펌프장 11개소, 배수설비 183가구
○ 사업비: 20,327백만원 (국비 12,158, 군비 8,169)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하수관로 매설공사 이후 일부 구간의 임시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특히 고령자와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도로 침하 및 단차 발생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함.

○ 당부사항

- 관계 부서에서는 하수관로 공사구간의 임시포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침하·요철 및 단차가 발생한 구간은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11) 지도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공사(건축)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지도읍 자동리 1988-2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1 ~ 2027.6
○ 부지면적: 27,621 ㎡
○ 시설규모: 배양장 지상 2층/ 관리사 지상2층/펌프실 지하1층, 지상1층
○ 시설내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
○ 사 업 비: 30,000백만원 (국비 15,000, 도비 360, 군비 12,3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스마트양식 실증시설과 배후부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양식어가의 참여 및 기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 및 예방조치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준공 이후 시험운영과 시설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스마트양식 기술의 실증과 보급을 통해 지역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12)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지도읍 광정리 일원
○ 사업기간: 2023. 2. ~ 2025. 12.
○ 사업내용: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식
- (주요수종) 나한송, 애기동백, 소귀나무, 썸머라일락 등
○ 사업비: 15,000백만원 (국비 7,500$^{50\%}$, 군비 7,500$^{5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도시숲 조성구간에 수목이 지나치게 밀집하여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목 성장에 따른 생육 경쟁과 고사 등이 우려되므로, 수종별 생육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경관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13) 증도 증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2차)

사 업 개 요

- ❍ 위　　치: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대초리 일원
- ❍ 사업기간 ┌ 총 괄 : 2025. 05. 14. ~ 2029. 01. 12.(06. 22.중지)
  　　└ 2 차 : 2026. 04. 02. ~ 2027. 03. 27.(06. 22.중지)
- ❍ 사업비: 4,470백만원(도급1,874, 관급 956, 기타 1,640)
- ❍ 사업내용: 배수로 1.4km, 농로1.5km, 암거 7개소
- ❍ 도 급 사: 주식회사 홍은산업건설 대표 고만성
- ❍ 공 정 율: 총괄 35% / 2차 0% (정지중)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과정에서 실제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통행 여건과 농업용수 이용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공사 중지 사유와 재개 가능 시점을 점검하여 후속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14) 임자 부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 업 개 요

○ 위　　치: 임자면 부동, 원상, 저동, 삼두, 필길마을 일원
○ 공사기간: 2026년 6월 09일 - 2028년 6월 07일(36개월)
○ 공사금액: 사업비 현황(14,133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
○ 하수관로: L = 10.763km -자연유하(D200) : 4.828km
-압송관로(D80) : 5.935km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하수관로 매설공사 이후 도로 복구 시 기존 포장과의 단차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마을안길 등 주민 통행이 잦은 구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복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와 시공에 철저

현 장 사 진



【하의면, 장산면, 신의면】 ⇒ 10월 22일 (목)

15) 장산 앤두막금항 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장산면 다수리 앤두·막금항 일원
○ 사업기간 ┌ (전체분) 2025. 12. 1. ~ 2027. 5. 24.(18개월)
　　└ (1차분) 2025. 12. 1. ~ 2026. 11. 25.(12개월)
○ 사업내용: 앤두선착장 연장, 기항지 신설, 물양장 신설 등
○ 사 업 비 ┌ (전체분) 3,824백만원(도급 3,367 / 관급 457)
　　├ (1차분) 2,244백만원(도급 2,000 / 관급 244)
　　└ (2차분) 1,580백만원(도급 1,367 / 관급 213)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앤두항 물양장 및 막금항 선착장 정비 시 실제 어선 접안 여건과 어업인의 이용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앤두항과 막금항 시설공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중 어업활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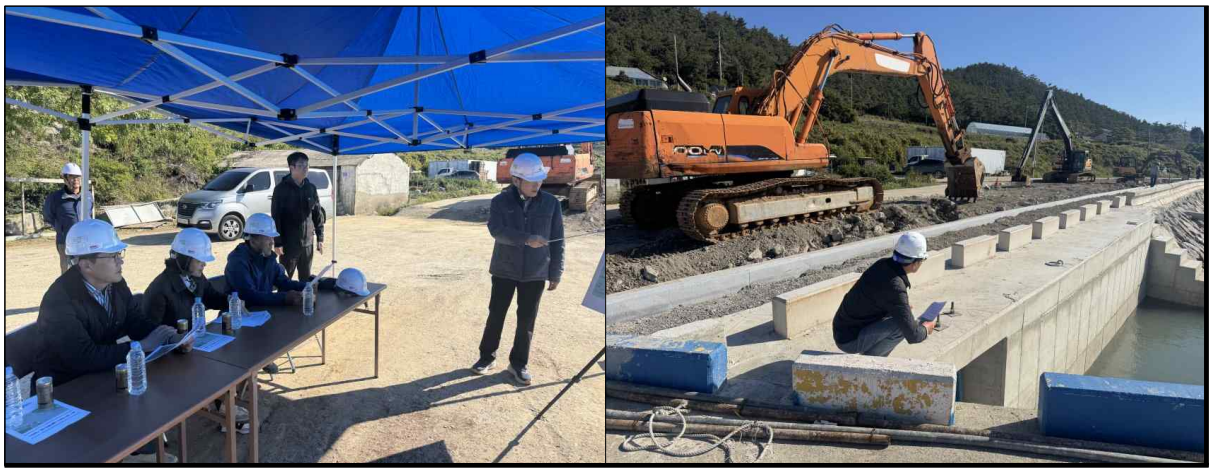

16) 하의 인동귤 정원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12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4년간)
○ 사 업 량: 16종 25,764주, 관리면적 10.7ha(8개소)
○ 사업내용:
- 김대중 前 대통령 생가 진입로에 **웅장한 숲길 조성**으로 감동있는 공간 조성
- 한반도 평화의 숲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인동귤 정원 조성**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인동귤 묘목(6,000주)의 협소한 공간에 방치되어 생육저하 및 관리에 어려움에 따른 새로운 부지확보 후 이식 필요
- 인동귤 정원과 소공원 등 관리 대상 면적이 넓어 제초, 전정, 병해충 방제 및 관수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정원산림총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동귤 묘목 6,000주를 이식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17) 신의 상동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의면 상태동리 일원
○ 사업기간 ┌ 총 괄 : 2026. 03. 30. ~ 2027. 09. 20.
　　　　 └ 1 차 : 2026. 03. 30. ~ 2027. 03. 24.
○ 사업내용: 펌프장신설, 배수장기계, 호안시설 등
○ 사업비: 1,000백만원 (특별시비 800, 군비 2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배수시설 설치 과정에서 농업용수 이용과 농기계 통행 등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

○ **당부사항**

-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배수펌프와 유수지 등 주요 시설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집중호우 시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 ⇒ 10월 23일 (금)

18) 2026년 자은 대율지구 사방댐 설치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자은면 대율리 산95-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6. 03. ~ 07.

○ 사업내용: 사방댐 1개소

- 전석댐(상장20, 하장10, 유효고 4.0), 개거 L=45.0m(2.0*1.5)

○ 사 업 비: 223백만원(국비70%, 시비15%, 군비15%)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하류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공된 사방댐의 안전성과 배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관내 산사태 및 토사유출 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추가 사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국·도비 등 관련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19) 자은 송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자은면 송산리(한운, 둔장, 송산, 대율) 일원
○ 사업기간: 2025. 6. 20 ~ 2028. 6. 16
○ 사업내용: 처리장 85㎥/일, 관로 L= 10.166km, 배수설비 217가구
○ 사업비: 16,717백만원 (국비 9,897, 특별시 1,364, 군비 5,456)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안전관리 및 신호수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공사 중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과정에서 흙탕물로 인한 도로 및 차량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방법을 개선

○ 당부사항

-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와 시공에 철저
- 살수차 운영 시 적정한 살수량과 방법을 적용하여 흙탕물로 인한 도로 및 차량 오염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 청소를 병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20) 중부권역 야간관광 인프라 개선사업(은암대교)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암태면・자은면 일원(은암대교)

○ 사업기간: 2026년 ~ 2027년(2년)

○ 사업내용: 경관조명 설치 1식

- 상부 난간, 거더 상부, 교각 등 조명기구(RGBW) 설치

○ 사업비: 1,500백만원 (특별시비 750, 군비 75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은암대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관광객이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사업비 투입에 상응하는 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관람 여건과 관광객 유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은암대교의 관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암태・팔금 지역 교량 등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암태・팔금 지역 교량 등 대체 대상지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21) 팔금 엘로우킹 정원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팔금면 원산리 일원

○ 조성기간 : 2022. 10. ~ 2025. 06. (정원산림총괄과)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3,700백만원(국비 50%, 군비50%)

○ 사업내용 : 엘로우정원 조성(2개소), 은행나무 숲길 2개소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엘로우킹 정원 정상(팔금면 원산리 497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무인카페와 잔디광장의 부지를 활용하여 민선9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체류형관광지(캠핑장 또는 글램핑장)로 조성 필요

○ **당부사항**

- 엘로우킹 정원과 엘로우퀸 정원, 은행나무 숲길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22) 안좌 우목항 어촌뉴딜300사업(선착장 조성)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우목항 일원
○ 사업기간: 2025년 12월 23일 ~ 2026년 12월 17일 (360일)
○ 사업내용: 경사식 선착장 조성
○ 사업비: 3,388백만원(도급액 3,179백만원, 관급액 209백만원)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선착장과 연계되는 교량 및 진입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과 어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선착장의 실제 이용 수요와 향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선착장과 연계 교량 및 진입시설의 사업 추진 일정과 이용 동선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압해읍】 ⇒ 10월 26일 (월)

23) 농수산물 유통센터 단지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압해읍 송공리 804-2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4. 11. ~ 2027. 12.(3년 2월)
○ 사업내용: 농수산물 유통시설단지 조성
  - 시설내용 : 유통시설,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완충녹지 등
○ 사업비: 13,018백만원(군비)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입주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실제 투자와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단지가 유휴시설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및 활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총사업비 130억 원의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잔여 공사비와 향후 추가 소요예산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실제 입주 의향과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입주기업 유치와 시설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조성된 단지가 유휴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24)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44-10 외 7필지

○ 사업기간: 2024 ~ 2026년

○ 사업내용:

- 친환경 새우양식 배합사료공장 건립

○ 사업비: 6,000백만원 (국비 3,000, 군비 1,800, 자담 1,200)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조성에 국비와 군비 등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생산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 구입비 절감과 양식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사업시행자가 약정한 관내 양식어가 대상 15% 할인판매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제 판매가격과 공급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25) 개체굴 양식·출하 및 보관시설

사 업 개 요

▢ 2021~2024. 1004굴 테이블 제작설치(해수부 공모)

○ 테이블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21.05월~2025.12월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55, 군비 55)
- 사 업 량 : 13,000set / 65,000망 / 6,500천미 / 세척기, 선별기, 부속자재 등
- 사업지구 : 자은면면전 등 10개소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개체굴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참여 어가별 생산량과 판매액, 실제 순소득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도별 투자액과 참여 어가 수, 생산·판매실적 및 소득 증대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당부사항

- 관계 부서에서는 개체굴 양식산업의 연도별 사업비와 참여 어가 수, 생산량, 판매액 및 실제 소득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26) 2026년 수산물 중형저온저장 시설사업(건축)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17-115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300[50%], 군비 180[30%], 자담 120[20%])
○ 사 업 자 : 이 서 윤(증도면 대초리 박정문 妻)
○ 사업내용 :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건립(건축, 냉동)
- 총 60평(냉동시설 44평, 급냉시설 16평)

점 검 결 과

○ **개선(건의)사항**
- 해당 없음

○ **당부사항**
- 냉동·저온저장시설은 설비 고장 시 저장 수산물의 품질 저하와 어업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동설비의 성능과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장치 설치 등 고장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바람.
- 새우 양식어가의 출하 시기 조절과 수급 안정, 적정 판매가격 확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현 장 사 진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0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최영진, 권오연, 강대성, 최성자

1. 개정이유

○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운영으로 모든 의원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위원회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조정(안 제2조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해당없음

5. 관계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 조치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 해당없음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3. (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 1. ---------- 8명 --- 2.·3. (현행과 같음)

의안발의 의원서명부

의 장
이상국

☐ 의안명 :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 :

위원회 명	성 명	날 인(서명)	비 고
	최영진	[illegible]	대표발의자
	김 호연	[illegible]	
	강대성	강대성	
	최성자	최성자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의원의 의회운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2조제1호).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신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를 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를 8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정수 및 소관 사항에는 변동이 없음.

○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의회 운영 전반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많은 의원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 숙의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 내용은 의회 내부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 사항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의회 운영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및 발의일자 : 최영진 의원 외 3인(2026. 10. 12.)

나. 회부일자 : 2026. 10. 12.

다. 상 정 일 : 2026. 10. 14.(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 결 일 : 2026. 10. 14.(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의원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회 전체 의원 수와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 확대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발의의원은 의회 운영과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답변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전체 의원 9명 중 의장을 제외한 8명 모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의 적정성,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간 기능 구분, 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다른 지방의회의 위원 정수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조례안 제출·검토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시기와 사전 협의의 충분성 등 절차적 운영에 관한 의견도 제시됨.

○ 찬성 의견에서는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가 특정 의원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이 제시됨.

5. 축조심사요지 : 별도 축조심사 없음

6. 위원회 심사결과 : 부결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의 제기에 따라 거수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명(문선웅 위원, 최성자 위원), 반대 3명(김혁성 위원, 김용배 위원, 김학기 위원)으로 부결되었음.

7. 소수의견 요지

○ 찬성 측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선 결			결재(공람)	의장	
접수일시	2026. 10. 19.	번호 11700		사무과장	
처리부서	신안군의회	임승희		의사담당	김소영

위원회 부결 의안 본회의 부의요구서

2026. 10. 19.

수 신: 신안군의회의장

제 목: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

2026. 10. 12. 최영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0)' 이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14.)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 구 자: 최 영 진 외
4 명

(찬성자 서명 별첨)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 성 의 원 서 명 부

찬 성 의 원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최 영 진		
전 오 맹		
오 선 응		
강 대 성		
최 성 자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2

제출연월일 : 2026. 10. 13.
제 출 자 :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현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집행기관: 820명 → 818명(감2)
- 의회사무기구: 19명 → 21명(증2)

❍ 연구직·지도직 비율 통합(별표 2)

- 연구관(10% 이내), 지도관(10% 이내) → 연구관·지도관(12% 이내)

❍ 직급별 정원(별표 3)

- 별정직: 1명 → 2명(증1)
- 일반직 4급: 5명 → 6명(증1)
- 일반직 5급: 54명 → 53명(감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 신안군 공고 제2026 - 1081호
- ❍ 예고기간 : 2026. 9. 10.~ 2026. 9. 30.(20일간)
-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820명”을 “8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9명”을 “21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와 같이 한다.

구분	연구직 · 지도직	
	연구관 · 지도관	연구사 · 지도사
비 율	(12)% 이내	(88)% 이상

별표 3의 표 중 4급란 및 5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정직 계의 총계란 및 같은 표 6급 상당 이하 계의 총계란 중 “1”을 각각 “2”로 하며, 연구직 계란 중 “연구직”을 “연구직 · 지도직”으로, 연구관란 중 “연구관”을 “연구관 · 지도관”으로, 연구사란 중 “연구사”를 “연구사 · 지도사”로 하고, 연구직 · 지도직 계란(종전의 연구직 계란을 말한다), 연구관 · 지도관란(종전의 연구관란을 말한다) 및 연구사 · 지도사란(종전의 연구사란을 말한다)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지도직 계란, 지도관란 및 지도사란을 각각 삭제한다.

4급	6	5		1		
5급	53	28	3	2	6	14
연구직 · 지도직 계	**39**	-				
연구관 · 지도관	4			3	1	
연구사 · 지도사	35	-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820명	1. ---------- 81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2. ---------- 21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29.5)% 이내	(24.5)% 이내	(10)%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0)% 이내	(90)%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50%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29.5)% 이내	(24.5)% 이내	(10)%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지도직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비 율	(12)% 이내	(88)%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50%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총 계	839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797	-				
3급	1	1				
4급	5	4		1		
5급	54	25	3	5	7	14
6급 이하 소계	737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연구직 계	9	-				
연구관	1			1		
연구사	8	-				
지도직 계	31	-				
지도관	3			1	2	
지도사	28	-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총 계	839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797	-				
3급	1	1				
4급	6	5		1		
5급	53	28	3	2	6	14
6급 이하 소계	737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계	2	-				
연구직·지도직 계	39	-				
연구관·지도관	4			3	1	
연구사·지도사	35	-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 820명 → 818명(감2)
- 의회사무기구: 19명 → 21명(증2)

❍ 연구직·지도직 직급별 정원 비율 통합(별표 2)

- 연구관(10% 이내), 지도관(10% 이내) → 연구관·지도관(12% 이내)

❍ 직급별 정원(별표 3)

- 별정직: 1명 → 2명(증1)
- 일반직 4급: 5명 → 6명(증1)
- 일반직 5급: 54명 → 53명(감1)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연구직·지도직의 정원 비율을 통합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839명으로 유지하면서 기관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 구조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신안군수(2026. 10. 13.)

나. 회부일자 : 2026. 10. 14.

다. 상 정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라. 의 결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 820명 → 818명(감2)
- 의회사무기구: 19명 → 21명(증2)

❍ 연구직·지도직 직급별 정원 비율 통합(별표 2)

- 연구관(10% 이내), 지도관(10% 이내) → 연구관·지도관(12% 이내)

❍ 직급별 정원(별표 3)

- 별정직: 1명 → 2명(증1)
- 일반직 4급: 5명 → 6명(증1)
- 일반직 5급: 54명 → 53명(감1)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연구직·지도직의 정원 비율을 통합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조직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은 고위직 증원이 아닌 현장 실무인력의 여건 보장에서 비롯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생략

5. 축조심사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결과 : 부결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3

제출연월일 : 2026. 10. 13.
제 출 자 :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현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청 실·국 개편(1실, 3국 → 1실, 2담당관, 5국)

- 기획전략실 → 기획홍보실
- 정책담당관, 청렴담당관 신설
-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 →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

❍ 본청 과 개편(25과 → 26과)

- 신성장동력국: 신재생에너지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스포츠산업과
- 복지안전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과, 돌봄지원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 농림축수산국: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 천일염과, 산림공원과
- 건설교통국: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도시건축과,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시설관리과
- 행정재정국: 민원행정과, 세무회계과, 행정지원과, 세계유산과

❍ 농업기술센터 과 개편(4과 → 2과)

-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 사업소 개편(9소 → 7소)

- 북부정원관리사업소 → 대광관광사업소
- 홍도원추리관리사업소 → 홍도관광사업소
- 가거도관리사무소 →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
- 자은휴양림사업소, 정원관광사업소 신설
-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 폐지

❍ 읍·면출장소 개편(10소 → 7소)

- 옥도출장소, 당사도출장소, 수치도출장소 폐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신안군 공고 제2026 - 1079호

❍ 예고기간 : 2026. 9. 10.~ 2026. 9. 30.(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장·국장·과장”을 “실장·담당관·국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국의 설치)”를 “(실·담당관·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전략실,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기획홍보실, 정책담당관, 청렴담당관,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 기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기획·조정·운영 및 재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군정홍보 및 홍보콘텐츠에 관한 사항
8. 언론홍보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9. 인구·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국정과제 및 공모사업 대응에 관한 사항
3.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에 관한 사항
4. 법제·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 및 통계 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청렴담당관) 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자체감사 운영
2. 상급·외부 기관 감사 및 조사 대응에 관한 사항
3. 공직비위 및 기동감찰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및 민간위탁 감사에 관한 사항
5. 사전컨설팅 및 예방감사에 관한 사항
6. 청렴·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신성장동력국) ① 신성장동력국에 신재생에너지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② 신성장동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재생에너지 종합정책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관광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유치·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공중 위생 종합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역사문화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10. 문화시설·미술관·박물관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3. 청소·생활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 진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복지안전국) ① 복지안전국에 주민복지과, 가족복지과, 돌봄지원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② 복지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법인·시설 및 복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출산·아동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출산·모자보건 등에 관한 사항

11. 교육·평생학습 및 장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 안전 종합관리 및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중대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16. 지역경제·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4(농림축수산국) ① 농림축수산국에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 천일염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농림축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종합정책 수립 및 농정기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예·특용 작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식품산업 및 농특산물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판매 및 산지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농지관리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인·농촌인력 및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업 육성 및 축산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 종합정책 및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업·어선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양식산업 및 전략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천일염산업 육성 및 천일염 유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임업 육성, 산림 조성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의5(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도시건축과,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사업 및 교통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수리시설 관리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3. 섬종합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연안 및 해양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 및 지역생활권 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및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8. 건축 허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9.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교통행정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중교통 및 흑산공항에 관한 사항

13. 해상교통 및 관공선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15. 토지, 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6(행정재정국) ① 행정재정국에 민원행정과, 세무회계과, 행정지원과, 세계유산과를 둔다.

② 행정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민원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제증명·여권 민원에 관한 사항

3. 토지·부동산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4. 지적관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 및 지적불부합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산업 및 어업 관련 민원·허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기획 및 부과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9. 세입·금고 및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계약·회계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안, 의전, 직원 복지 및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록물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민간단체 및 지역공동체 협력에 관한 사항

14. 복무·노무 및 공직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조직·인사 및 공무원 역량 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인권·자살예방 및 사회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연환경·해양생태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자원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가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식량·원예·특용 작물 등 재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농업 및 첨단농업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계 임대 및 기계화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제목 “(소장 및 단장)”을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장 및 단장을 두고, 소장 및 단장”을 “소장을 두고, 소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종합계획 및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 운영·요금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 종합계획 및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라. 하수·분뇨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마. 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사업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광관광사업소

가. 관광지·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관광홍보 및 축제운영에 관한 사항

라. 튤립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은휴양림사업소

가. 뮤지엄파크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객 안내·질서 및 해설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자연휴양림 및 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도관광사업소

가. 홍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나. 홍도 생태·전시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문화재 보존 및 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

가. 가거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 관리 및 관광객 안내·질서 등에 관한 사항

다. 가거도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원관광사업소

가. 지방·국가 정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퍼플섬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테마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섬정원 및 정원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정원관광 홍보 및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산연구사업소

가. 수산연구분야 총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굴 육성 등 양식연구분야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스마트양식 및 수산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읍장”을 “읍장을”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업 소 명 칭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수련태도길 128-37
대광관광사업소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길 172-7
자은휴양림사업소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2길 508-63
홍도관광사업소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9-8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5
정원관광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340
수산연구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남세촌길 28-17

별표 4의 표 중 옥도 출장소, 당사도 출장소 및 수치도 출장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 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27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1004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과장, 지역경제과장, 섬해양정책과장, 육상교통과장, 민원행정과장

② 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과장, 지역경제과장, 섬해양정책과장, 육상교통과장, 민원행정과장

③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예술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섬해양정책과장, 민원행정과장

④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해양수산과장, 섬해양정책과장

⑤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림축수산국장, 농산업유통과장, 양식산업과장, 천일염과장, 산림공원과장

⑥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을 “신성장동력국장”으로 한다.

⑦ 신안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담당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⑧ 신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을 “기획홍보실장, 신성장동력국장, 복지안전국장, 농림축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⑨ 신안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을 “기획홍보실장, 가족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신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기획예산과”를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⑪ 신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청렴담당관”으로 한다.

⑫ 신안군 관광 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섬해양정책과장, 관광과장

⑬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교통국장, 주민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육상교통과장

⑭ 신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지역경제과장, 육상교통과장, 민원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⑮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⑯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관광과장, 안전총괄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양식산업과장, 산림공원과장, 섬해양정책과장, 세계유산과장

⑰ 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⑱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군정 조정 관련”으로 한다.

⑲ 신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촌진흥과장

⑳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재정국장, 가족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

별표 중 “여성청소년과”를 “가족복지과”로 한다.

㉑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산업유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섬해양정책과장

㉒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산업유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정책팀장”을 “친환경농업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을 “농산업유통과장, 농림축수산국장”으로 한다.

㉓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산업유통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업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양식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㉔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산업유통과장

라. 천일염과장

㉕ 신안군 농어촌 가로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섬발전진흥과장”을 “섬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㉖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홍보실장

나. 산림공원과장

다. 건설과장

라. 섬해양정책과장

㉗ 신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산업유통과장”으로 한다.

㉘ 신안군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㉙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자원과장”을 “농산업유통과장, 양식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㉚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을 “대광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을 “대광관광사업소장”으로, “북부정원관리사업소 관리개발팀장”을 “대광관광사업소 관리팀장”으로 한다.

㉛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㉜ 신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공원과장

㉝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성장동력국장, 문화예술과장, 산림공원과장

㉞ 신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안전국장, 보건소장, 돌봄지원과장

㉟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을 "신성장동력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㊱ 신안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㊲ 신안군 맛의 예술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문화관광과장, 뮤지엄조성과장"을 "관광과장, 농산업유통과장, 양식산업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㊳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섬발전진흥과장”을 “섬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㊴ 신안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건설교통국장, 섬해양정책과장

제23조제3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섬해양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제24조제1호 중 “투자유치과장”을 “섬해양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유치1팀장”을 “섬정책팀장”으로 한다.

㊵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통지원과장”을 “육상교통과장”으로 한다.

㊶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㊷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친환경농업팀장”을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1. 농업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㊸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원산림총괄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㊹ 신안군 섬음식 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관광국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 농산업유통과장, 양식산업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㊺ 신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복지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을 “기획홍보실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복지안전국장”으로 한다.

㊻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㊼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㊽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노인건강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 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산업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 섬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㊾ 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제유통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노인건강과장”을 “주민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지역경제과장, 섬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경제유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㊿ 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해양수산과장·해양자원과장·천일염사업단장”을 “해양수산과장·양식산업과장·천일염과장”으로 한다.

<51> 신안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해양자원과장”을 “양식산업과장”으로 한다.

<52>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유통과장”을 “농산업유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천일염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천일염과장”으로 한다.

<53>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재생에너지국장”을 “신성장동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재생에너지과장

<54>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과장

<55> 신안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섬안전개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섬발전진흥과장”을 “섬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56>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세계유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을 “환경과장, 농산업유통과장, 양식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계유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57>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복지안전국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복지과장

<58> 신안군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예산과를”을 “기획홍보실을”로 한다.

<59> 신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노인건강과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산업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60>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섬해양정책과장

<61>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유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가족복지과, 해양수산과, 행정지원과

<62> 신안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업 폐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축산과장

<63>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인건강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64>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노인건강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65> 신안군 장학재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에너지연금교육과장”을 “기획홍보실장, 돌봄지원과장”으로 한다.

<66>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섬안전개발국장”을 “복지안전국장”으로 한다.

<67>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68>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농업

과장이 맡고”를 “농산업유통과장이 되고”로 한다.

2. 농산업유통과장

<69>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실”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신성장동력국장, 복지안전국장, 농림축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재정국장

<70>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전략실장”을 “복지안전국장”으로 한다.

<71> 신안군 정원도시·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림공원과장

<72>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73>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신성장동력국장, 복지안전국장, 농림축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재정국장

제1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74>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을 “신성장동력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75>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각각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청소년과장은”을 “가족복지과장은”으로 한다.

<76>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

<77> 신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78> 신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

<79>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을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80>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을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81>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신재생에너지과장·주민복지과장

<82>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안전국장

3. 주민복지과장

<83>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인건강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84>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을 “신성장동력국장,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85> 신안군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을 “신성장동력국장”으로 한다.

<86>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 농산업유통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를 “농산업유통과”로 한다.

<87>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를 “농산업유통과”로 한다.

<88>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89>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90>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예술관광국장이”를 “부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과장, 산림공원과장

<91> 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회계과”를 “세무회계과”로 한다.

<92> 신안군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어항 및 주변시설 사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실장·신재생에너지과장·주민복지과장·해양수산과장·섬해양정책과장

<93>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광관광사업소장

<94>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95> 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예술과장

별표 1]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추천부문별 사전 심사부서(제7조제1항 관련)

수상구분	세부항목	사전심사부서	비고
지역사회봉사	건설	건설과	
	복지증진	주민복지과	
	사회개발 · 소득증대	기획홍보실	
으뜸농어민	농업	농산업유통과	
	임업	산림공원과	
	수산	해양수산과	
교육문화	교육 · 언론 · 학술	기획홍보실	
	문화 · 예술 · 체육	문화예술과	
충효도	효행선행자	주민복지과	

[별표 1]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임기관
관광과	1. 공중위생업소 지도 2. 식품위생업소 지도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읍·면장
환경과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 사육 등 제한 2. 공중화장실 관리 3.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포획물 신고 접수 및 확인 4.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로 등) 운영관리	• 「가축분뇨법」 제8조 • 「공중화장실법」 제8조 • 「야생생물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31조	읍·면장
주민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2. 자활대상자 선정 3. 자활근로사업장 지도감독 4. 보호대상아동 귀가조치와 사후지도 5. 매장, 개장, 화장신고 6.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아동복지법」 제15조 • 「장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읍·면장
안전총괄과	1.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 학교, 병원, 교회 등 시설의 내용 ○ 토지 가옥 물자의 사용 ○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처리 2. 민방위 준비명령 3. 민방위과태료 징수	• 「재난안전법」 제35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읍·면장
지역경제과	1. 시장 사용허가 및 갱신	• 「신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읍·면장

	2. 사용료 징수 및 반환 3. 시장운영 공공요금 납부 4. 시장사용 휴업(폐업) 신고수리 5. 시장일시사용 승인. 6. 시장사용 제한 7.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 같은 조례 제6조 • 같은 조례 제10조 • 같은 조례 제13조 • 같은 조례 제14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22조	
농산업 유통과	1. 농약판매업 등록, 폐업, 휴업, 재개업 2. 종자업 등록 3. 육묘업 등록 4. 종자업 또는 육묘업 변경 5. 비료판매업의 신고 6. 비료판매업의 승계신고 7. 비료판매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 「농약관리법」 제3조~제7조 • 「종자산업법」 제37조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3 • 「비료관리법」 제11조 • 「비료관리법」 제13조 • 「비료관리법」 제11조	읍·면장
농업축산과	1. 불법 농지전용 행위에 대한 조치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읍·면장
산림공원과	1.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 허가 2. 가로수 응급 복구	• 「산림보호법」 제15조 • 「신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2조	읍·면장
건설과	1. 접도구역 관리(군도) 2. 안전건설사업 편입토지의 협의 취득	• 「도로법」 제22조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	읍·면장
섬해양 정책과	1. 섬발전진흥사업 편입토지의 협의취득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	읍·면장
도시건축과	1. 무허가 건축물 조사 2.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수리,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간판 나. 세로형 간판	• 「건축법」 제82조 •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0조	읍·면장

	• 건물의 3층이하 벽면에 표시된 간판 다. 돌출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의 5미터 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옥상 간판 • 단,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마. 자주 이용하는 간판 •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간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사. 선전탑 아. 아 취 자. 현수막 차. 벽 보 카. 전 단 타. 창문의 이용광고문 3.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 내 토지 출입허가 4. 농지의 전용신고	• 「국토계획법」 제130조 • 「농지법」 제35조	
시설관리과	1.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 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 산축포함) 2. 군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3.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징수	• 「공유재산법」 제14조, 「산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산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 「공유재산법」 제44조 및 제81조, 「산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및 제62조	읍·면장
민원행정과	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 「주민등록법」 제2조	읍·면장

	2. 숙박업소 개업, 휴업, 폐업신고 3. 목욕장업 개업, 휴업, 폐업신고 4. 이용업 개업, 휴업, 폐업신고 5. 세탁업 개업, 휴업, 폐업신고 6. 식품제조·가공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7. 식품판매 제조가공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8. 식품판매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9. 식품접객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세무회계과	1. 수입증지 관리책임 2.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 징수금의 징수	• 「신안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 •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읍·면장
행정지원과	1. 읍·면 소속공무원 사무 분장 2. 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3. 당직명령 4. 문서보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조의2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읍·면장
보건행정과	1. 제1군 감염병 예방조치 및 방역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조치 3. 감염병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다만, 2개시군 지역에 걸칠 때에는 제외)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수령의 금지,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상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의 금지 • 감염병 전파매개가 되는 물건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읍·면장

	소지,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쥐, 위생해충, 그 밖에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상하수도 사업소	1. 급수공사의 신청 접수 2. 급수공사의 시행 및 준공 3. 급수설비 관리 4. 급수 중지와 폐전 5. 급수설비의 철거 6. 상수도 사용수량 검침 7. 수도사용요금 징수 8. 요금 등의 감면 신청 접수 9. 급수정지처분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정수장 및 수도관 유지관리 12. 상수도 수질 검사 및 관리 13. 소화전 유지관리 1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15. 사용자대표 협의회 설치 운영 16. 상하수도사업 편입토지의 협의 취득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 같은 조례 제9조, 제10조 • 같은 조례 제35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39조 • 같은 조례 제25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34조 • 같은 조례 제36조 • 같은 조례 제20조 • 「수도법」 제21조 • 「수도법」 제29조 • 「수도법」 제45조 •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조~제7조 •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 ~ 제15조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	읍·면장

[별표 1]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4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신안군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가족복지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정보통신 사고 나.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행정지원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정책담당관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가뭄으로 인한 재난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다중운집인파재난	시설관리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행사소관부서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스포츠산업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축산과 건설과
9. 산업통상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 라.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신안군 주관부서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미세먼지	환경과 환경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지역경제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육상교통과 도시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15. 중소벤처기업부	가. 전통시장	지역경제과
16. 성평등가족부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복지시설	가족복지과 가족복지과/ 주민복지과
17.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행정지원과
18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19.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세계유산과
20.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공원과
21. 해양경찰청	가. 유도선사고 나. 여객선사고	해상교통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신안군 사전대비 단계

<table>
<tr><td>본 부 장</td><td colspan="3">군수</td></tr>
<tr><td>차 장</td><td colspan="3">부군수</td></tr>
<tr><td>통 제 관</td><td colspan="3">해당 재난 수습주관부서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td></tr>
<tr><td>담 당 관</td><td colspan="3">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td></tr>
<tr><td rowspan="15">실 무 반</td><td>인 원</td><td colspan="2">총 4+α명</td></tr>
<tr><td>반 장</td><td colspan="2">안전총괄과 소속 팀장</td></tr>
<tr><td>1) 재난상황 관리반 (3+α명)</td><td>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α명)</td><td>·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2명</td></tr>
<tr><td rowspan="13">2) 협업기능반 (α명)</td><td>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td><td>· 안전총괄과, 주민복지과</td></tr>
<tr><td>나) 긴급 통신 지원</td><td>· 행정지원과</td></tr>
<tr><td>다) 시설피해 응급복구</td><td>·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천일염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과, 산림공원과</td></tr>
<tr><td>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td><td>· 지역경제과</td></tr>
<tr><td>마) 재난관리자원 지원</td><td>· 안전총괄과</td></tr>
<tr><td>바) 교통대책</td><td>·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td></tr>
<tr><td>사)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td><td>· 보건행정과</td></tr>
<tr><td>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td><td>· 환경과, 해양수산과</td></tr>
<tr><td>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td><td>· 가족복지과</td></tr>
<tr><td>차) 사회질서 유지</td><td>·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경찰서</td></tr>
<tr><td>카) 수색, 구조·구급 지원</td><td>·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소방서</td></tr>
<tr><td>타) 재난 수습 홍보</td><td>· 기획홍보실</td></tr>
<tr><td colspan="2">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td><td>·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목포·무안·신안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KT목포지사, 육군 제8332부대, 광주지방기상청 등</td></tr>
</table>

비고(근무방법)

1. 1) 재난상황 관리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별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해당 재난 수습주관부서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7+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	
	1) 재난상황관리반 (6+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α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3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2+α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1+α명)	·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1+α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α명)	·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1+α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행정지원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 (α명)	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안전총괄과, 주민복지과
		나) 긴급 통신 지원	· 행정지원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	·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천일염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과, 산림공원과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	·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사)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 보건행정과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	· 환경과, 해양수산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가족복지과
		차) 사회질서 유지	·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경찰서
		카) 수색, 구조·구급 지원	·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소방서
		타) 재난 수습 홍보	· 기획홍보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		·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목포·무안·신안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KT목포지사, 육군 제8332부대, 광주지방기상청 등

비고(근무방법)

1. 1)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1)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1)라)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별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해당 재난 수습주관부서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34+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	
	1) 재난상황관리반 (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α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3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2+α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1+α명)	·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1+α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α명)	·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1+α명
		라) 행정지원팀 (2명)	· 행정지원과 직원 2명
	2) 협업기능반 (26+α명)	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 (2+α명)	· 안전총괄과, 주민복지과
		나) 긴급 통신 지원 (1+α명)	· 행정지원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 (12+α명)	·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 천일염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과, 산림공원과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1+α명)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 (1+α명)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 (2+α명)	·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사)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1+α명)	· 보건행정과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 (2+α명)	· 환경과, 해양수산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1+α명)	· 가족복지과
		차) 사회질서 유지 (1+α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경찰서
		카) 수색, 구조·구급 지원 (1+α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소방서
		타) 재난 수습 홍보 (1+α명)	· 기획홍보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		·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목포·무안·신안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KT목포지사, 육군 제8332부대, 광주지방기상청 등

비고(근무방법)

1. 1)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1)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1)라)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별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비상3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해당 재난 수습주관부서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64+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	
	1) 재난상황관리반 (11+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α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4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2+α명)	·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α명)	·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2명
		라) 행정지원팀 (2명)	· 행정지원과 직원 2명
	2) 협업기능반 (52+α명)	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 (4+α명)	· 안전총괄과, 노인건강과
		나) 긴급 통신 지원 (2+α명)	· 행정지원과
		다) 시설피해 응급복구 (24+α명)	·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 천일염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예술과, 산림공원과
		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2+α명)	· 지역경제과
		마) 재난관리자원 지원 (2+α명)	· 안전총괄과
		바) 교통대책 (4+α명)	·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사)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2+α명)	· 보건행정과
		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 (4+α명)	· 환경과, 해양수산과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2+α명)	· 가족복지과
		차) 사회질서 유지 (2+α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경찰서
		카) 수색, 구조·구급 지원 (2+α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소방서
		타) 재난 수습 홍보 (2+α명)	· 기획홍보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명)		· 신안교육지원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공사 목포·무안·신안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KT목포지사, 육군 제8332부대, 광주지방기상청 등

비고(근무방법)

1. 1)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1)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1)라)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별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table>
<tr><td>본 부 장</td><td colspan="3">군수</td></tr>
<tr><td>차 장</td><td colspan="3">부군수</td></tr>
<tr><td>통 제 관</td><td colspan="3">재난의 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국장·직속기관의 장</td></tr>
<tr><td>담 당 관</td><td colspan="3">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td></tr>
<tr><td rowspan="15">실 무 반</td><td>인 원</td><td colspan="2">총 10+α+β+ɣ명</td></tr>
<tr><td>반 장</td><td colspan="2">팀장급 1명</td></tr>
<tr><td rowspan="2">1) 재난상황 관리반 (9명)</td><td>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td><td>·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td></tr>
<tr><td>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td><td>·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td></tr>
<tr><td rowspan="13">2) 협업기능반 (α)</td><td>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td><td>· 안전총괄과, 주민복지과</td></tr>
<tr><td>나) 긴급 통신 지원</td><td>· 행정지원과</td></tr>
<tr><td>다) 시설피해 응급복구</td><td>· 시설물 소관부서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도시건축과 등)</td></tr>
<tr><td>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td><td>· 지역경제과</td></tr>
<tr><td>마) 재난관리자원 지원</td><td>· 안전총괄과</td></tr>
<tr><td>바) 교통대책</td><td>·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td></tr>
<tr><td>사)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td><td>· 보건행정과</td></tr>
<tr><td>아) 재난현장 환경 정비</td><td>· 환경과, 해양수산과</td></tr>
<tr><td>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td><td>· 가족복지과</td></tr>
<tr><td>차) 사회질서 유지</td><td>·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경찰서</td></tr>
<tr><td>카) 수색, 구조·구급 지원</td><td>· 재난수습 주관부서, 신안소방서</td></tr>
<tr><td>타) 재난 수습 홍보</td><td>· 기획홍보실</td></tr>
<tr><td colspan="2">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td><td>· 신안경찰서,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목포·무안·신안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td></tr>
<tr><td colspan="2">현장지원반(ɣ)</td><td>·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td></tr>
</table>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 관리반·협업기능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 실장·담당관·국장·과장 ---------- ---------- ---------- --------.
제3조(실·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실,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둔다.	제3조(실·담당관·국의 설치) ---------- 기획홍보실, 정책담당관, 청렴담당관,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
제4조(기획전략실에 두는 과) ① 기획전략실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과, 투자유치과, 경제유통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② 기획전략실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기획 및 종합 조정 및 군의회 운영지원 2. 예산편성, 재정계획, 보조금·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에	제4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 기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기획·조정·운영

관한 사항
3.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공보 및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법제·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7. 공항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교통 수단 도입 및 교통망 연계에 관한 사항
9. 기본사회·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10.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귀농·귀촌 정착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12. 귀어·귀촌 종합대책 및 어업인 후계인력에 관한 사항
13.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4. 압해읍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15.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경제정책 수립,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재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군정홍보 및 홍보콘텐츠에 관한 사항
8. 언론홍보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9. 인구·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예산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예술관광국에 행정지원과, 뮤지엄조성과, 문화관광과, 뮤지엄정원과, 민원봉사과, 노인건강과, 여성청소년과, 세계유산과, 회계과를 둔다.	제5조(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문화예술관광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 및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 군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2. 국정과제 및 공모사업 대응에 관한 사항
3. 수산민원,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에 관한 사항
4. 보훈, 희망복지, 맞춤형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4. 법제·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5. 노인, 장사문화, 복지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 및 통계 행정에 관한 사항
6.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7.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8. 여성정책, 자원봉사,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정책 및 홍보, 관광개발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13.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갯벌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청소 및 자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7. 의전, 보안, 기록관운영, 노동조합단체교섭, 복무, 복리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인사, 조직관리, 교육훈련, 선거, 시책업무 등에 관한 사항	

19. 동향, 국민운동사회단체지원,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온나라, 재정 등) 및 통신 시스템(네트워크, 전화, 팩스 등)에 관한 사항 2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23. 재산관리, 청사관리, 청사·관사 개보수에 관한 사항 24. 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25. 군민 식문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 26. 향토음식 경진대회와 상품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 27. 음식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8. 맛의 예술섬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9.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숙박시설의 건립과 정비 등에 관한 사항 31. 뮤지엄파크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2. 뮤지엄파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뮤지엄파크 수목 식재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섬안전개발국에 두는 과) ① 섬안전개발국에 안전총괄과, 섬발전진흥과, 작은섬정원과, 해양수산과, 해양자원과, 천일염지원과, 교통지원과를 둔다. ② 섬안전개발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다리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 및 사회재난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청렴담당관) 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자체감사 운영 2. 상급·외부 기관 감사 및 조사 대응에 관한 사항 3. 공직비위 및 기동감찰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및 민간위탁 감사에 관한 사항 5. 사전컨설팅 및 예방감사에 관한 사항 6. 청렴·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연안관리지역사업 및 지방어항 전반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계획 및 조명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8. 작은섬정원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작은섬정원조성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사업 총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해양환경 관리어업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12. 해양치유산업 및 수산물 축제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13. 귀어·귀촌 종합대책 및 어업인 후계인력에 관한 사항 14. 수산 종·양식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수산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16.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삭 제	

18. 김 육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9. 왕새우 육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20. 삭 제	
21. 천일염사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2.·23. 삭 제	
24. 운수행정, 교통안전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전반에 관한 사항	
25. 공영버스 관리 및 유가보조금 등 육상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	
26.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교통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	
27. 보조항로에 관한 사항	
28. ~ 38. 삭 제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국에 두는 과) ① 신재생에너지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과, 에너지연금교육과, 렌터카지원과를 둔다.	제6조의2(신성장동력국) ① 신성장동력국에 신재생에너지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② 신재생에너지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성장동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본계획	1. 신재생에너지 종합정책 수립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관리계획(재정비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주식해상풍력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4.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6. 렌터카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관광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유치·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공중 위생 종합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역사문화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10. 문화시설·미술관·박물관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13. 청소·생활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 진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3(복지안전국) ① 복지안전국에 주민복지과, 가족복지과, 돌봄지원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② 복지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법인·시설 및 복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출산·아동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출산·모자보건 등에 관한 사항 11. 교육·평생학습 및 장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 안전 종합관리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중대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16. 지역경제·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4(농림축수산국) ① 농림축수산국에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 천일염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농림축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종합정책 수립

	및 농정기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산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예·특용 작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식품산업 및 농특산물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판매 및 산지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농지관리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인·농촌인력 및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업 육성 및 축산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 종합정책 및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업·어선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양식산업 및 전략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천일염산업 육성 및 천일염 유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임업 육성, 산림 조성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5(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도시건축과,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사업 및 교통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수리시설 관리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3. 섬종합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연안 및 해양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 및 지역생활권 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및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8. 건축 허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9.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교통행정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중교통 및 흑산공항에 관한 사항 13. 해상교통 및 관공선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15. 토지, 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6(행정재정국) ① 행정재정국에 민원행정과, 세무회계과, 행정지원과, 세계유산과를 둔다. ② 행정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민원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제증명·여권 민원에 관한 사항 3. 토지·부동산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4. 지적관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 및 지적불부합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산업 및 어업 관련 민원·허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기획 및 부과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9. 세입·금고 및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계약·회계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안, 의전, 직원 복지 및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록물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민간단체 및 지역공동체 협력에 관한 사항 14. 복무·노무 및 공직자 관리

	에 관한 사항 15. 조직·인사 및 공무원 역량 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인권·자살예방 및 사회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연환경·해양생태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에 관한 사항
제9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농촌자원 및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7. 가축 사양 및 친환경농업 기	제9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자원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원예·특작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 특화작목 발굴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0. 새소득원 실증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농업·농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1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및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8. 조림, 숲가꾸기 사업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가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식량·원예·특용 작물 등 재배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농업 및 첨단농업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계 임대 및 기계화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9.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20. 공원,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벼농사경쟁력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2. 밭농사경쟁력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4. ~ 26. 삭 제	
제14조(소장 및 단장) 사업소에 소장 및 단장을 두고, 소장 및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장) ---------- 소장을 두고, 소장---------- ---------- ---------- ----------.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분장 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 조직관리 및 행정·예산운영 나. 상·하수도 시설계획 및 시행관리 다. 상·하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분장 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종합계획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 운영·요금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 종합계획 및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라.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라. 하수·분뇨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마. 상·하수도 시설 수질관리	마. 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사업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관리	바.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북부정원관리사업소	2. 대광관광사업소
가. 청소년 수련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광지·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사업소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다. 관광홍보 및 축제운영에 관한 사항
라. 대광해수욕장 홍보와 관광지 유치에 관한 사항	라. 튤립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마.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바. 대광관광지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은휴양림사업소
사. 튤립축제에 관한 사항	가. 뮤지엄파크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아. 법령에 따른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나. 관광객 안내·질서 및 해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라일락정원, 수선화정원, 맨드라미정원, 홍매화정원	다. 자연휴양림 및 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일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가. 천연기념물의 보호·보존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
나. 홍도지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라. 홍도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원추리정원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가거도관리사무소
가. 삭 제
나.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다. 가거도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도관광사업소
가. 홍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나. 홍도 생태·전시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문화재 보존 및 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
가. 가거도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 관리 및 관광객 안내·질서 등에 관한 사항
다. 가거도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정화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원관광사업소
가. 지방·국가 정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퍼플섬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테마정원 조성 및 관리에

라. 삭 제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섬정원 및 정원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동부정원관리사업소	마. 정원관광 홍보 및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분재정원, 갯국정원, 핑크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수산연구사업소
나.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가. 수산연구분야 총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병풍도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굴 육성 등 양식연구분야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삭 제	다. 스마트양식 및 수산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남부정원관리사업소	
가. 삭 제	
나. 공원조성을 위한 개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인동귤정원, 올리브정원, 화이트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중부정원관리사업소	

가. 퍼플섬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퍼플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퍼플섬정원, 보라배롱플로팅정원, 엘로우정원, 암석정원, 납매정원, 작약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퍼플섬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서부정원관리사업소 가. 수국정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국정원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붉은꽃정원, 삼색병꽃정원, 수국정원, 백서향정원, 동백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9. 수산연구사업소 가. 수산연구분야 총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굴 육성 등 양식연구분야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 16. 삭 제	
제18조(읍·면장) ① 읍에는 읍장 두고, 면에는 면장을 둔다. ② (생 략)	제18조(읍·면장) ① ---- 읍장을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칭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수련태도길 128-37
북부정원관리사업소	신안군 지도읍 읍내길 71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9-8
가거도관리사무소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5
동부정원관리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340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신안군 장산면 장산동면길 181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신안군 안좌면 소곡두리길 284
서부정원관리사업소	신안군 도초면 도초서길 208
수산연구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남세촌길 28-17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칭	위 치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수련태도길 128-37
대광관광사업소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길 172-7
자은휴양림사업소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2길 508-63
홍도관광사업소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9-8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5
정원관광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340
수산연구사업소	신안군 압해읍 남세촌길 28-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4]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선 도 출장소	신안군 지도읍 솔길 16	선 도 일원
매화도 출장소	신안군 압해읍 매화길 678	매화도 일원
고이도 출장소	신안군 압해읍 고이길 10-4	고이도 일원
병풍도 출장소	신안군 증도면 병풍1길 54	병풍도 일원
우이도 출장소	신안군 도초면 우이진리길 41-8	우이도 일원
태 도 출장소	신안군 흑산면 장굴길 49-1	태 도 일원
대둔도 출장소	신안군 흑산면 김이수길 55	대둔도 일원
옥도 출장소	신안군 하의면 옥도길 58	옥도 일원
당사도 출장소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길 73-2	당사도 일원
수치도 출장소	신안군 비금면 수치도길 249-10	수치도 일원

개 정 안

[별표 4]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선 도 출장소	신안군 지도읍 솔길 16	선 도 일원
매화도 출장소	신안군 압해읍 매화길 678	매화도 일원
고이도 출장소	신안군 압해읍 고이길 10-4	고이도 일원
병풍도 출장소	신안군 증도면 병풍1길 54	병풍도 일원
우이도 출장소	신안군 도초면 우이진리길 41-8	우이도 일원
태 도 출장소	신안군 흑산면 장굴길 49-1	태 도 일원
대둔도 출장소	신안군 흑산면 김이수길 55	대둔도 일원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핵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현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청 실·국 체계 개편

- 현행 1실·3국 체계에서 1실·2담당관·5국 체계로 개편
- 기획전략실을 기획홍보실로 변경
- 정책담당관 및 청렴담당관 신설
- 기존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으로 개편

❍ 본청 과 단위 조직 개편

- 현행 25과에서 26과로 조정
-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를 재편하고 정책 분야별 기능을 조정

❍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

- 현행 4과에서 농촌진흥과와 기술보급과의 2과 체계로 개편

❍ 사업소 조직 개편

- 현행 9개 사업소에서 7개 사업소로 조정
- 북부정원관리사업소를 대광관광사업소로, 홍도원추리관리사업소를 홍도관광사업소로 변경
- 가거도관리사무소를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로 변경
- 자은휴양림사업소 및 정원관광사업소 신설
- 남부·중부·서부정원관리사업소 폐지

❍ 읍·면 출장소 개편

- 현행 10개 출장소에서 7개 출장소로 조정
- 옥도출장소, 당사도출장소 및 수치도출장소 폐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과 핵심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실·국 체계를 개편하고, 과 단위 조직 및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소와 읍·면 출장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조직을 분야별로 재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출장소 폐지에 따른 섬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 및 불편에 따른 대응책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신안군수(2026. 10. 13.)
나. 회부일자 : 2026. 10. 14.
다. 상 정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라. 의 결 일 : 2026. 10. 28.(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핵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현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청 실·국 체계 개편
- 현행 1실·3국 체계에서 1실·2담당관·5국 체계로 개편
- 기획전략실을 기획홍보실로 변경
- 정책담당관 및 청렴담당관 신설
- 기존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으로 개편

❍ 본청 과 단위 조직 개편
- 현행 25과에서 26과로 조정
-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를 재편하고 정책 분야별 기능을 조정

❍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
- 현행 4과에서 농촌진흥과와 기술보급과의 2과 체계로 개편

❍ 사업소 조직 개편
- 현행 9개 사업소에서 7개 사업소로 조정
- 북부정원관리사업소를 대광관광사업소로, 홍도원추리관리사업소를 홍도관광사업소로 변경
- 가거도관리사무소를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로 변경
- 자은휴양림사업소 및 정원관광사업소 신설
- 남부·중부·서부정원관리사업소 폐지

❍ 읍·면 출장소 개편
- 현행 10개 출장소에서 7개 출장소로 조정
- 옥도출장소, 당사도출장소 및 수치도출장소 폐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과 핵심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실·국 체계를 개편하고, 과 단위 조직 및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소와 읍·면 출장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직진단 용역과 출장소 폐지에 따른 섬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 및 불편에 따른 대응책 마련 여부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생략

5. 축조심사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결과 : 부결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6

제출연월일 : 2026. 10. 13.
제 출 자 :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명권자,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의 정책 방향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이사: 10명 이내, 감사: 2명
- 공개모집 원칙
-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예외적용
- 이사장 및 부이사장: 상근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 신안군 공고 제2026 - 1087호
❍ 예고기간 : 2026. 9. 10.~ 2026. 9. 30.(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을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선임직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의 연임 규정을 따른다.

⑦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사무국의 직원”을 “사무국”으로,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관리법」 제24조”를 “관리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를 “신안군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임제한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관) ① (생 략)	제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등) ① ----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
②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④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선임직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의 연임 규정을 따른다.
<신 설>	⑦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생 략)	제10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정관에서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사무국) ① ---------- 정관에서 ---------- 사무국----------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② ---------- 정관에서 ---------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관리법」 제24조---------. ---------- ----------.
제17조(감독·보고·감사) ①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보고·감사) ① ---------- 신안군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명 및 관련 조문

○ 「신안 신재생에너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단 운영 필수 경비 : 출연금(인건비, 운영경비)

○ 군 위탁사업 추진 : 지역에너지센터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홍보)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7년 본예산 반영 예산 : 280,000천원

- 군 출연금 : 250,000천원
- 위탁사업비 : 3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군 출연금 : 재단 운영경비(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 위탁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홍보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7년)	2차년도 (28년)	3차년도 (29년)	4차년도 (30년)	5차년도 (31년)
계	560,000	280,000	280,000			
군 출연금	500,000	250,000	250,000	-	-	-
위탁사업	60,000	30,000	30,000	-	-	-

※ 2029년도 군 출연계획 5년 종료로 재단 재립 자립 계획임

다. 재원 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총 계		280,000	280,000				560,000
의존 재원	소 계	280,000	280,000				560,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280,000	280,000				56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군비)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3. 사전협의 : 기획예산과 예 산 팀 장 김 기 정

4. 작 성 자 : 해상풍력과장 代) 해상풍력정책팀장 박 용 신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Ⅱ. 임원의 인사

④ 임원 후보자의 모집

가. 공개모집 원칙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함.(법 제9조제2항)

– 비상근·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방식 등을 다른 임원과는 달리 간소화 가능

– 다만, 임원의 연임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 가능

○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토록 함

⑦ 연임 및 해임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함. 인사권자는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반영토록 함

○ 기관장의 연임 기준

–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기관장의 해임 기준

– 법 제9조 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실적이 목표치의 50% 수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가 아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의 수익이 2년 이상 최근 5년간 평균 수익의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장이 아닌 임원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직위별 직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되 기관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 준용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임원의 선출방법, 임명권자,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의 정책 방향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출연기관 임원 인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임 방식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 선임직 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 선임직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6항)

❍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항)

❍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11조)

❍ 재단 정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3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28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

❍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와 입법 목적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임직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과 임기·연임 제한을 명확히 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신안군수(2026. 10. 13.)

나. 회부일자 : 2026. 10. 14.

다. 상 정 일 : 2026. 10. 28.(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 결 일 : 2026. 10. 28.(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취지를 반영하여,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임원의 선출방법, 임명권자, 임기 및 연임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수의 정책 방향과 재단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이사: 10명 이내, 감사: 2명
- 선임직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명시
- 선임직 임원의 임기 2년 및 한 차례 연임 가능 규정
-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의 임기 종료 관련 사항 규정
-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상근 규정

❍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선임직 이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11조)

❍ 감독·보고·감사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임직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과 임기·연임 제한을 명확히 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가. 위원 질의

❍ 안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선임직 임원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는 단순한 임기 조정이 아니라 군수 교체를 임원의 임기 종료 사유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임원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임원의 직무상 귀책사유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군수 교체만으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임원 책임 및 해임체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안 제8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를 위한 기구로서 재단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임원의 임기 종료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은 법적 근거와 명확성, 기존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나. 집행부 답변요지

❍ 군수 교체 시 선임직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한 규정은 신임 군수의 정책 방향과 재단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임기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함.

❍ 인수위원회의 임기 연장 요청 규정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인수위원회가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함.

다. 기타 질의 및 토론요지

❍ 재단 설립 이후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운영성과, 출연금 집행내역 및 임직원 인사·조직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재단 운영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안건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5. 축조심사요지

❍ 개정조례안의 임원 임기 종료 및 연장 규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별도의 조문별 수정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음.

6. 위원회 심사결과 : 보류

❍ 재단 임원의 임기 종료 및 연장 규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재단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함.